

2024학년도 서울캠퍼스

대학안전관리계획

2024. 2.

목 차

I.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요	1
1. 목표 및 기본방향	1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3
II. 위험요인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7
1. 재난	7
① 자연재난	7
② 사회재난	14
2. 안전사고	16
① 대학 안전사고	16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37
③ 연구실사고	40
3. 감염병 확산	45
①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45
4. 범죄	49
① 일반범죄	49
② 성범죄	54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59
① 산업재해	59
② 중대재해	68
6. 기타	78
① 비상사태(전시, 침투·도발 등)	78

목 차

Ⅲ.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80
Ⅳ.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84
Ⅴ.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96
Ⅵ.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0
※ [붙임1] 위험요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총괄)	101
[붙임2] 위험요인별 피해 현황(총괄)	104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비전

모두를 위한 안전한 대학생살 구현

목표

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문화 확산

추진과제

1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 위험별 대응매뉴얼과 안전조치
- 위험별 피해현황과 예방 및 대응 조치 계획

2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 대학안전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 연구실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3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 법령에 규정된 안전교육의 충실한 이수율 통한 안전문화 확산
- 정기적인 재난대비훈련

4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 목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 설정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행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업무처리 절차마련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조속한 복구 등 수습능력 제고
- 재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 관련 예산 편성과 전담 조직 구성·운영

<위험요인별 관련 주요 법률>

구 분	주요 법률
1. 재난	▪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2. 안전사고	▪ 「고등교육법」, 「교육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3. 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범죄	▪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5. 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6. 비상사태	▪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방침

- 대학 안전보건 경영 방침 설정을 최우선 의무 이행사항으로 규정
- 대학 소속 구성원뿐만이 아니라 대학 사업장 종사자를 보호 대상으로 고려하여 이사장 또는 총장의 안전보건 경영 리더십 강조
- 재난사고, 안전사고, 산업재해는 총괄부서에서 중점관리
- 사고 발생 시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위기관리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대학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재난·안전 관련 총괄 업무는 대학별 법정 총괄 재난안전부서(또는 경영책임자 직속 대학 전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인원 확보 노력
 - 재난·안전 분야별 세부 구체적인 업무추진은 대학별 업무분장 부서에서 지정 주관
 - 재난안전 총괄부서는 대학 주요 관리 업무의 대응 절차 및 종합적인 예방대책 수립·시행
- 체험 위주의 교육훈련을 통한 위기대응 능력 강화로 유사시 신속 보고체계 이용 및 유관기관의 비상 연락망 활용

□ 수립 절차

- **(계획수립·시행)**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시행
- **(계획게시·제출)** 학교의 장은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공시 항목관리기관'에 제출*

* 대학안전관리계획은 대학정보공시 항목으로 '항목관리기관(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제출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① 학교 현황

☐ 일반현황

학교명	상명대 학교		설립 구분		사립	
주 소	서울시 종로구 홍지문2길 20, 상명대 학교					
전 화	02-2287-5114	FAX	02-2287-0031	홈페이지	www.smu.ac.kr	
총장	홍성태	총괄안전관리 책임자(관)		상명대 학교 총장		

☐ 교직원 및 학생 현황 (23. 10. 1 기준)

학생 (명)	학부생	대 학원		합계	비고
		석사	(석)박사		
	10,936	772	472	12,180	-

교직원 (명)	교직원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현업업무(직원/용역)	합계
	183	465	57	46/45	895

☐ 학교 위치 및 비상대피도



② 조직체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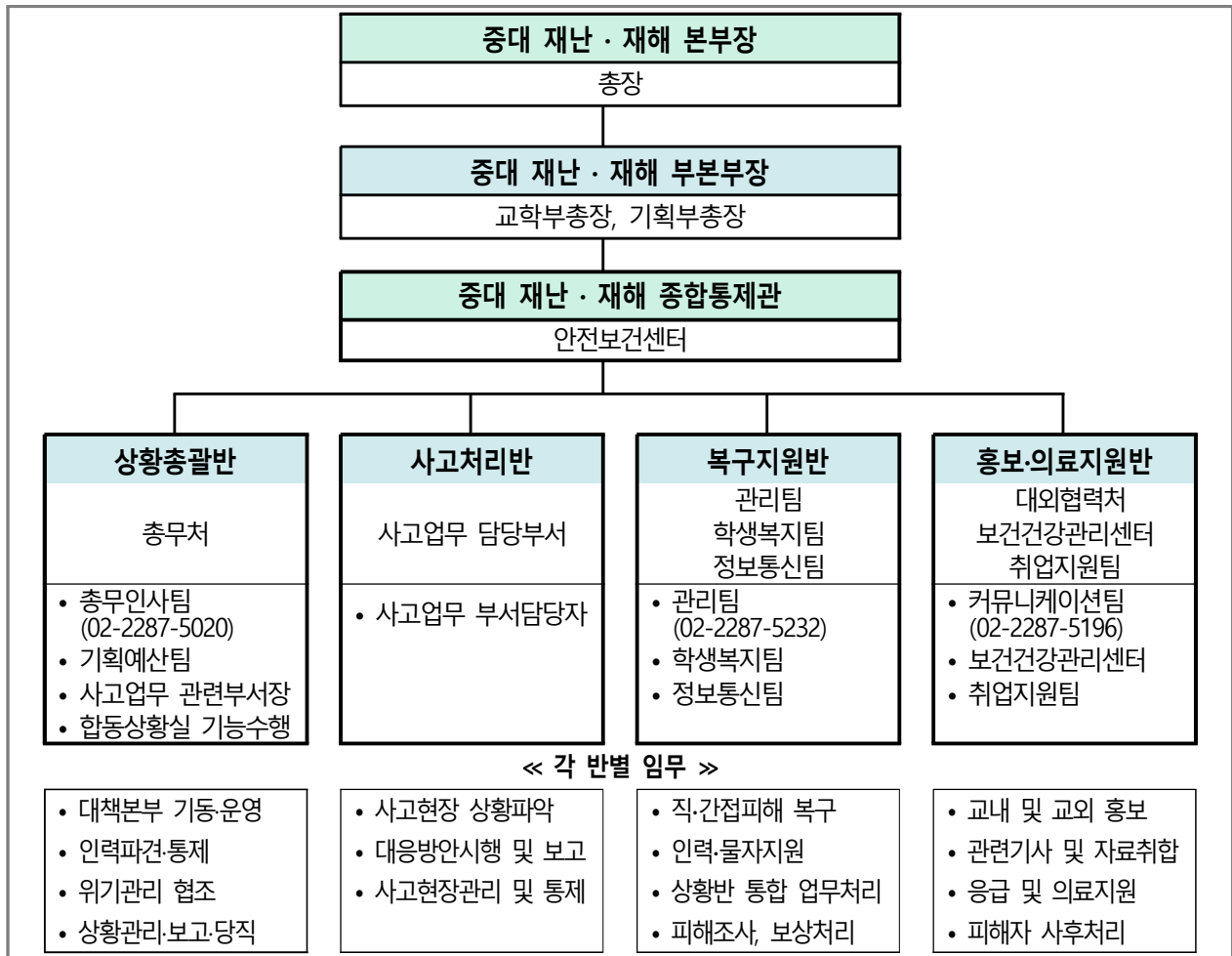
□ 담당부서 현황

구분	위험유형	주관부서	협조·지원부서
총괄	대학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안전보건센터	전 행정부서
1. 재난	자연재난	관리팀	총무인사팀, 학생복지팀 학사운영팀
	사회재난	관리팀	
2. 안전사고	대학안전사고	학생처, 총무처, 안전보건센터 교무처, 입학처, 학술정보관, 박물관 미래교육원, 국제언어문화교육원 박물관, 상명아트센터, 상명수련원 인문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경영경제대학, 융합공과대학 문화예술대학, 계당교양교육원	
	교육시설사고	관리팀	총무인사팀, 학생복지팀
	연구실사고	관리팀	해당 단과대학 산학연구처, 대학원
3. 감염병	코로나 19	총무인사팀	기획예산팀 교원인사팀 학사운영팀 학생복지팀 대학원교학팀 학술정보지원팀 국제학생지원팀 미래교육원교학팀
4. 범죄	일반범죄	총무인사팀	학생복지팀, 교원인사팀
	성범죄	인권센터	학생복지팀 총무인사팀 교원인사팀 대학원교학팀
5. 재해	산업재해	안전보건센터 전 행정부서 해당 단과대학, 대학원	
	중대재해	안전보건센터 전 행정부서 해당 단과대학, 대학원	
6. 기타	비상사태	예비군대대	총무인사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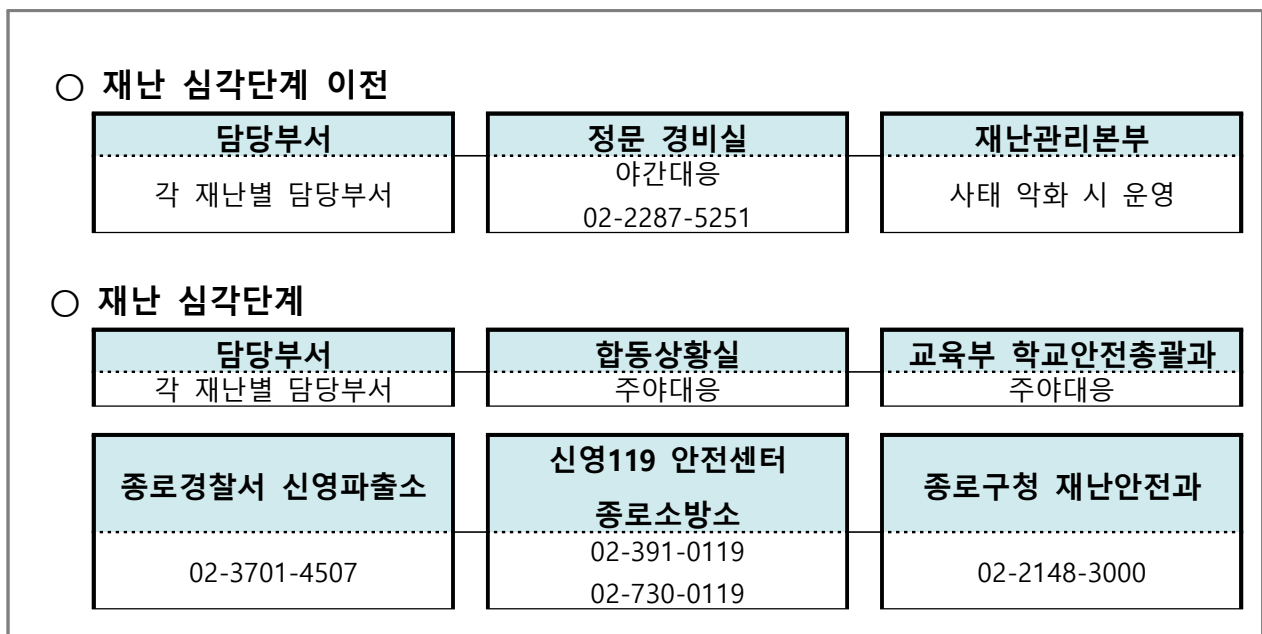
□ 비상 연락망

부서명	직 책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	핸드폰
총장실	총장	홍성태	02-2287-5005	
기획총장실	기획부총장	권기환	02-2287-5008	
교학총장실	교학부총장	김미경	02-2287-5083	
총장실장실	실장	나정호	02-2287-5018	
대외협력처	처장	홍영준	02-2287-5036	
기획조정처	처장	권기환	02-2287-5008	
정보통신처	처장	이흥주	02-2287-5058	
총무처	처장	구성본	02-2287-5040	
교무처	처장	양석준	02-2287-5009	
학생처	처장	전영옥	02-2287-5014	
입학처	처장	강태구	02-2287-5010	
산학연구처	처장	유훈	02-2287-5228	
인권센터	센터장	김동민	02-2287-7013	
안전보건센터	센터장	구성본	02-2287-7058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	최연실	02-2287-5041	
사범대학	학장	장덕호	02-2287-5081	
경영경제대학	학장	김기태	02-2287-5210	
융합공과대학	학장	황민철	02-2287-5395	
문화예술대학	학장	이정아	02-2287-5161	
계당교양교육원	학장	정수열	02-2287-5109	
대학원	원장	오동일	041-550-5323	
학술정보관	관장	김영준	02-2287-5192	
미래교육원	원장	류현승	02-2287-5367	
국제언어문화 교육원	원장	홍영준	02-2287-5036	
박물관	관장	이정아	02-2287-5161	
상명아트센터	센터장	류현승	02-2287-5367	
상명수련원	원장	김미경	02-2287-5083	

□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 비상연락망 구축



1.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관리팀	팀장	구성본	02-2287-7058	주관부서
팀원	관리팀	주임	함준수	02-2287-7173	
팀원	관리팀	담당	강홍식	02-2287-7101	
팀장	총무인사팀	팀장	안종혁	02-2287-7044	협조부서
팀장	학생복지팀	팀장	홍영숙	02-2287-7025	
팀장	학사운영팀	팀장	이호선	02-2287-7054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태풍)** 열대저기압 중심부의 최대풍속이 17m/s 이상으로 발달하여 태풍으로 명명된 것
 - 태풍이 발생되면 풍랑, 해일, 호우, 강풍으로 인하여 홍수, 산사태, 대규모 정전 등으로 인한 대학 시설물 및 학생 피해, 학생수업 결손 등의 인적·물적 피해 발생
- **(호우)**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지칭
 - 국지성 집중호우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대학 시설물 붕괴·매몰 위험 및 운동장, 강의실 침수 등의 피해 발생
- **(대설)** 일정 시간에 강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 도심 내 주요 간선도로 및 시 외곽 도로의 통행이 불가하고 고립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학생들이 등교에 차질을 빚으며 학생수업 결손 초래
- **(지진)** 지구내부에서 장시간 축적된 에너지가 순간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의 일부가 지진파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파되어 지표면에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현상
 - 지진 발생으로 인명 피해, 전력공급의 차질과 방송통신 시설에 피해 발생 및 라이프라인(life-line) 손상에 따른 수도물 및 가스공급 중단

□ 피해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 원인분석

○ 재난피해 발생된 사례 없음

- 태풍 '000'의 내습에 따른 초속00m/s의 강풍과 00mm/h 집중호우 등의 기상이변의 주요원인으로 연도별 피해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로, 기상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재해취약시설 사전예방 관리·조치 강화 필요

□ 원인분석 (작성사례)

- (보행자 사망사고) 차량소통 중심의 법·제도 및 속도관리, 운전자의 안전의식 미흡 등
 - 현행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교차로, 보·차도 미분리 도로 등 보행자 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지역에서 보행자의 권리와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 보행자 사망사고는 충돌속도 50km/h부터 급격하게 증가함에도 교통 선진국에 비해 도심속도(km/h)가 높음(한국 60~80, 스웨덴 40~60, 영국 48, 프랑스 50)
 - 일반국민 교통안전의식 설문조사 결과(* 17.11월, 교통안전공단)
 - 위험운전 경험률 : 졸음운전 71%, 난폭운전 70%, 신호위반 53%, 휴대폰 사용 73%
- (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 사고) 보행자에 대한 배려·보호의식이 미흡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충격에도 사망 가능성이 높은 고령자·어린이 피해 증가
 -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보호구역 지정·정비는 미흡
 - * '16년 노인보호구역은 1,107개소로 어린이보호구역(16,355개소)의 7% 미만이며, 노인보호구역 정비율도 76%(838개소)에 불과
 - 어린이 보호 안전수칙 미준수*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는 지속 발생
 - * 서울신문 조사 결과(* 17.11월)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30km/h)를 초과한 차량이 70%
- (화물차·사업용차량·이륜차 사고) 화물업계 과당경쟁으로 과속·과적·과로 경향이 있으며, 사업용 차량에 대한 면허관리 미흡 등
 - 이륜차의 경우 상대적으로 약한 면허취득기준으로 인한 운전미숙,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 부족 등이 원인
- (지자체 관할도로 사고) 지자체 교통안전실태에 대한 평가 및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지자체의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낮고, 인력·재정상 한계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예방·대비) 학생 및 교직원 재난안전교육을 통한 재난 대응역량 강화
- (대응·조치) 재난 관련 신속한 상황전파 및 보고체계 확립, 안전한 학사 운영을 위한 긴급대책 및 휴업 등 학사 운영조정 안내
- (수습·복구) 학사 운영 결손을 최소화하여 학생의 수업권 확보, 시설·심리·학업 지원 관련 등 다양한 분야의 복구계획 시행

※ 관련 매뉴얼 : 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 주요상황 대응매뉴얼(교육부, 2021)

《 [재난공통] 재난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예시)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예방교육

- 자연재난 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및 지침에 따른 재해취약시설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의식 고취
- 학생, 교직원 대상으로 자연재난 사고 예방 관련 교육 수행

< 작성예 : 예방교육 >

◎ 대학 캠퍼스 구성원(교직원, 학생 포함) 교육실시(온라인교육)

- (실시) 여름철, 겨울철 각 1회 실시
- (홍보) 학기 초 각 대학(학부, 학과) 학생회를 통한 정기안전교육 홍보 실시
- (평가) 교육 후 평가·시험 실시(온라인교육) 및 우수학부(학과) 포상 실시 등

○ 홍보활동

- 자연재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퍼스 내 재난유형별 예방 활동 동아리 운영, 포스터 공모전 등 홍보 활동

○ 재난대응훈련

-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재난대응훈련 실시
- 관계 부처 및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한 대학 구성원 대상의 정기적인 대피훈련 실시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 재난사고 대비·대응 체계(상황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단계별 재난 상황 판단 (관심-주의-경계-심각) 및 재난단계별 보고·전파
- 재난 발생 시 단계별 담당 부서 및 실무자(정·부) 지정 관리

○ 재난단계별 매뉴얼 운용·대응

- **1단계** 관심, 주의단계

- 캠퍼스 내부 담당부서 상황모니터 및 재난 상황별 매뉴얼에 따른 대응
- 비상연락망 점검, 당직실, 담당부서 순찰 등 수행

- **2단계** 경계단계

- 캠퍼스 내부 담당부서 비상근무 체제 돌입
- 상황모니터 및 재난 상황별 매뉴얼에 의거하여 대응
- 취약 및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 조치 / 부서별 협의(긴급 대피, 홍보 등)
- 교내 재난관리담당부서와 연락망 유지
-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 기관 협조 요청
- 재해 상황의 신속한 파악 및 대처

- **3단계** 심각단계

- 상황모니터 및 재난 상황별 매뉴얼에 의거하여 대응
- 재난관리본부 구성 및 대학합동상황실 운영
- 필요 시 재난관리본부 내 조직을 활용하여 업무지원
- 교육부 및 시 재난대책본부, 유관기관 협의

○ 재난상황보고·전파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성·운영

- 재난사고 보고체계 일원화 및 신속 보고·전파 체계 가동

- 교육부 안전대표 메일(moe119@moe.go.kr)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시, 24시간 일관성 있는 보고체계 유지
- 교육부 안전대표 메일로 보고 후 유선연락
- 교육부 상황보고 및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에도 재난상황 통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 - 재난상황 보고

- 중대 재난발생 시 교직원, 학생, 방문객 등에게 사고 상황 및 대피로 등을 전파
- 대학교 캠퍼스 내·외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구축된 재난안전관리 주관·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 네트워크 활용 및 기관별 보유 자원(캠퍼스 시설 등) 공유 및 관련 내용 제공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피해조사

- 피해상황 조사 및 조사표 작성
- 재난피해 조사서 대장 작성

- 피해복구계획(안)과 인적·물적 피해 및 복구내역 조사

※ 피해조사결과를 교육부에 제출 (피해신고)

○ 피해 복구 우선순위 설정

- 피해 조사표 및 조사서 대장을 통한 피해 복구 우선순위 설정

- 피해복구계획(안)에 포함시켜 복구계획 수행에 반영

○ 사상자 대책

- 부상자 치료대책

- 의료반의 편성·운영
- 보건소, 보건지소 등 비상대기조 편성·운영
- 경상자는 원거리의 병·의원으로 후송
- 중상자는 최대한 가까운 거리의 종합 병원급으로 후송
- 보상의무자의 치료비 부담능력 및 보험조치 가능여부 확인 조치

- 사망자 대책

- 사망진단을 위한 병원 후송
- 사망자 신원 파악 후 유가족에게 즉각 연락
- 진단 후 보상 내용 결정(장례비, 유족배상 등)
- 보상금 지급·정산

- 구호활동

- 교통이 편리한 곳에 구호센터 설치·운영
- 상황에 따라 군부대 또는 시·군 의료구호반 파견 요청
- 의료활동 외에 상담 등 대피소 순회진료 등 구호활동 실시
- 피해지역 보건소장이 신속한 구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난 보건 대책 현지 본부를 설치, 체계적인 구호활동 추진

○ 현장복구

- 재난복구는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지역주민 및 민·관·군의 협조로 복구
- 대학 구성원 및 외부인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피해재발이 우려되거나 개량 계획이 있는 구조물은 예산 허용범위 내 개량복구**

* (원상복구) 재난발생으로 기존 시설이 파손되어 기존 시설과 유사하게 복구

** (개량복구) 재난발생으로 기존 시설 파손 시 재발 방지를 위해 시설의 기능을 크게 개선하여 복구

○ 재난 모니터링 및 평가

- 대학 내 발생한 실험·실습실 사고를 통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제거 및 예방활동에 활용
- 중대 안전 사고의 전 과정에 대한 실행 측면과 조직 복원성 수준 측면 모두에서 개선사항 파악
- 도출된 개선사항은 '대학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보완·추진

< 작성예 : 모니터링 및 평가 >

◎ 모니터링 주요 결정사항

- 모니터링 대상 및 측정방법
- 재난(사고)에 대한 모니터링, 피해현황 측정, 원인 분석 및 평가방안 모색
- 정기적인 모니터링 시기 결정
- 사전 재난(사고)요인을 사고 발생 전에 식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
- 상기 활동에 대한 문서화 작업
- 지속적인 수정 및 보완

◎ 모니터링 주요 착안사항

- 각 대학의 지리적·환경적 요인 고려 및 최근 재난(사고)현황 사전 중점 분석
- 각 대학의 재난(사고)관리 정책의 적절성·시의성 및 준수 여부
- 재난(사고) 발생 후, 재난(사고)안전관리체계의 적절성 여부 등

◎ 모니터링 점검 활동을 통한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모든 재난(사고)발생 매뉴얼에 반영

◎ 재발방지를 위해 부적합사항의 원인 검토·제거, 유사 부적합사항 규명

※ 관련 매뉴얼 : [별첨1] 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 주요상황 대응매뉴얼(교육부, 2021)

참고 자료 [공통자료] 재난대응·복구 체계·절차



□ 재난안전관리 단계 구분

❖ **(예방)** 재난·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재난·사고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 「재난안전법」 제4장 재난의 예방(제25조의2~제33조의3) 관련

❖ **(대비)** 재난·사고 발생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 준비, 교육, 훈련함으로써 재난·사고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재난·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

※ 「재난안전법」 제5장 재난의 대비(제34조~제35조) 관련

❖ **(대응)** 재난·사고 발생 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2차 위기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

※ 「재난안전법」 제6장 재난의 대응(제36조~제57조) 관련

❖ **(복구)** 재난·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재난·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보완하는 일련의 활동

※ 「재난안전법」 제7장 재난의 복구(제58조~제66조의3) 관련

2 사회재난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관리팀	팀장	구성본	02-2287-7058	주관부서
팀원	관리팀	주임	서건	02-2287-7080	
팀원	관리팀	담당	강홍식	02-2287-7101	
팀장	총무인사팀	팀장	안종혁	02-2287-7080	협조부서
팀장	학생복지팀	팀장	홍영숙	02-2287-7025	
팀장	학사운영팀	팀장	이호선	02-2287-7054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화재·폭발)**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 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
 - 방화, 실화, 테러 등에 의한 (대형)화재 및 자연발화, 천재지변에 의한 발화, 기타 폭발, 관리부실 등 부주의에 의한 (대형)화재로 인한 대인·대물 피해발생
- **(건물붕괴)** 학생, 교직원이 이용하는 시설물(체육관, 강의동, 기숙사 등) 등의 붕괴나 파괴 등으로 인한 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난
 - 구조적 결함, 부실시공, 노후화, 관리부실 등에 의한 건축물 붕괴 발생 및 건설 공사 현장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인적사고 초래
- **(미세먼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먼지) 중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
 - 사업장, 발전소, 자동차 등에 의한 초미세먼지 생성과 대기 정체 및 외기 유입에 따른 고농도 초미세먼지 상황 발생으로 학생건강 위협 및 수업결손 초래

□ 피해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 원인분석

○ 사회재난이 발생한 사례 없음

- 건조한 날씨와 강풍의 영향으로 화재의 횟수 및 피해의 정도가 점차 증대되는 추세로 화기, 전열기구 사용·취급 시 안전교육과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강화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화재·폭발) 불법·위험 전열기구 이용실태 점검, 소화기·소화전 등 소방기구·시설 설치·작동 상태 점검·관리, 화재경보 비상벨, 대피로 등 피난시설 이용·행동요령 숙지

- ※ 관련 매뉴얼 :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교육부, 2021)
우편물테러 식별 및 대응요령(대테러센터)

○ (건물붕괴) 일상·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발생에 대비한 보고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합동조사 체계 확립

- ※ 관련 매뉴얼 : 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 주요상황 대응매뉴얼(교육부, 2021)

○ (미세먼지) 공기정화장치, 공조장치 등 미세먼지 저감 장치·시설의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위기징후 감시체계 구축 및 위기경보 발령 시 학사운영 대책방안 마련

- ※ 관련 매뉴얼 :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대응 매뉴얼(교육부, 2022)

2. 안전사고

① 대학 안전사고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처장	학생처	처장	전영옥	02-2287-5014	주 관 부 서
처장	교무처	처장	양석준	02-2287-5009	
센터장	안전보건센터	센터장	구성본	02-2287-7058	
처장	총무처	처장	구성본	02-2287-7058	
처장	입학처	처장	강태구	02-2287-5010	
학장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	최연실	02-2287-5041	
학장	사범대학	학장	장덕호	02-2287-5081	
학장	경영경제대학	학장	김기태	02-2287-5210	
학장	융합공과대학	학장	황민철	02-2287-5395	
학장	문화예술대학	학장	이정아	02-2287-5161	
학장	계당교양교육원	학장	정수열	02-2287-5109	
원장	대학원	원장	오동일	041-550-5323	
관장	학술정보관	관장	김영준	02-2287-5192	
원장	미래교육원	원장	류현승	02-2287-5367	
원장	국제언어문화교육원	원장	홍영준	02-2287-5036	
관장	박물관	관장	이정아	02-2287-5161	
센터장	상명아트센터	센터장	류현승	02-2287-5367	
원장	상명수련원	원장	김미경	02-2287-5083	

□ 위험요인

- (학교안전사고) 수업, 실습, 집단연수 등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 교육활동 중 낙상사고, 비래·전도, 충돌·협착, 화상, 교통사고 등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신체 장애, 정신적 피해 발생 및 학습 결손 초래

□ 피해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 피해	사망(실종)	-	-	-	-	-
	부상	-	-	-	-	-
	계	-	-	-	-	-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교내활동)** 학교안전사고 유사사례, 통계 등의 검토·분석을 통한 사고유발 요인 사전 예방·대응관리와 안전사고 유형별 신속한 보고체계 및 적절한 보상·회복 지원 기반 조성

※ **관련 매뉴얼** : 다중이용시설 테러예방활동 가이드라인(대테러센터)
차량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대테러센터)

- **(교외활동)** 대학본부, 단과대학 등이 주관하여 교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 시 교통·숙박시설 이행, 행사관련 각종 보험가입 등 학생안전에 필요한 각종 사항 점검·교육

※ **관련 매뉴얼** :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교육부, 2023)
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 매뉴얼(교육부, 2021)

《 [안전사고 공통] 안전사고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❶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사고유형별 예방·관리)

○ 교내 교통안전

- 보행자의 안전성과 보행흐름을 고려한 교통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점검, 유지관리

- 교내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개선
- 보행자·차량이 함께 이용하는 도로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충분한 보차도 분리시설 마련
- 교내 공사장 주변에는 통행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방안 마련
- 교내 차도는 보행자가 이용하는 건물의 출입지점과 충분히 떨어져 있도록 설치·개선
- 교내도로는 양호한 배수시설의 설치·관리
- 교내도로의 바닥이 평평하고, 파손에 의한 틈새나 구멍이 없고, 흙이나 물기 등에 의해 미끄럽지 않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 보행자들의 발이 미끄러지거나, 걸리거나, 부딪치거나, 헛 딛어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이 없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에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바닥표시와 안내판의 설치·관리
- 교내도로는 비상 시 비상차량의 신속한 통행이 언제나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에는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간의 시야 방해물이 설치·적재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 이용자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한 속도 규정을 마련하고, 과속방지시설의 설치·관리
- 교내도로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을 설치·관리
- 교내 경사도로에는 미끄럼방지, 과속방지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 교내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오토바이, 자전거 이용 수칙 마련·시행

○ 행사 안전

- 행사 안전기준을 적용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입학식, 졸업식 등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100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는 참가자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행사시설 점검 실시 및 안전요원 배치
-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부서 및 학부(과/전공)은 행사계획 수립 시 안전교육 예방 매뉴얼을 참고하여 행사 시작 일 전까지 전결권자의 결재 확인
- 대규모 행사의 경우 행사기획팀, 장소와 배치 설계, 의료진, 비상계획과 경비, 커뮤니케이션, 교통, 계약자와 그 밖의 서비스 제공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행사계획 수립
- 행사장소 및 사람에게 차량 돌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애물을 확인하고, 경비인력 배치 등 예방대책 마련
- 행사승인 부서는 행사 관련 정보, 위험성 관리방안, 안전 점검사항, 행사 예상 참가 인원, 행사 관련 계약업체, 보험가입 여부 등 행사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확인 후 승인
- 행사승인 부서는 대규모행사를 준비하는 대학의 기관·조직·단체에 대해서 이들의 안전한 행사 기획과 운영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력, 장비 등을 제공
- 행사와 관련한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계약업체나 서비스업체는 상해보험 가입
- 비상 시 신속한 대피·응급처치를 위해 행사장과 가장 가까운 비상탈출구, 화재경보기를 확인하고, 비상 집합장소 지정, 신속한 사고신고·보고 방법 등을 포함한 비상 절차 마련
- 행사 시 전기안전, 식품안전, 행사에 사용되는 놀이기구 등의 안전 확인
-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 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규정 준수 여부 확인

○ 행사 안전(입학식, 졸업식)

- 행사 안전기준을 적용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입학식, 졸업식 등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100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는 참가자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행사시설 점검 실시 및 안전요원 배치
-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대학의 기관·조직·단체의 장 또는 대표는 행사계획 수립 시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 시작 일 2주 전까지 행사 승인부서(교무처)에 제출
- 대규모행사의 경우 행사기획팀, 장소와 배치 설계, 의료진, 비상계획과 경비, 커뮤니케이션, 교통, 계약자와 그 밖의 서비스 제공자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행사 안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계획서」와 함께 행사 승인부서(교무처)에 제출
- 행사장소 및 사람에게 차량 돌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애물을 확인하고, 경비인력 배치 등 예방대책 마련
- 행사승인 부서는 행사 관련 정보, 위험성 관리방안, 안전 점검사항, 행사 예상 참가 인원, 행사 관련 계약업체, 보험가입 여부 등 행사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확인 후 승인

- 행사승인 부서는 대규모행사를 준비하는 대학의 기관·조직·단체에 대해서 이들의 안전한 행사 기획과 운영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력, 장비 등을 제공
- 비상 시 신속한 대피·응급처치를 위해 행사장과 가장 가까운 비상탈출구, 화재경보기를 확인하고, 비상 집합장소 지정, 신속한 사고신고·보고 방법 등을 포함한 비상 절차 마련
- 행사 시 전기안전, 식품안전, 행사에 사용되는 놀이기구 등의 안전 확인
-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 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규정 준수 여부 확인

○ **학생 집단활동 안전**(2023년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 준수)

- 참가 학생 집단활동의 형태, 참가자, 규모, 지역, 활동(프로그램)에 따른 위험 정도를 고려한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대학 및 학생회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집단연수 운영 시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준수사항 마련
-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최소한의 안전관련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대학본부는 학기초 학생회 간부 등을 대상으로 집단연수 시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교육
- 대학생 집단행사 시 인파밀집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철저

- 학생집단연수를 주관하는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기획자, 인솔자, 참가자의 역할과 책임
- 학생집단연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승인
- 학생집단연수 참가자에 대한 사전안전교육
- 사고 및 위기 발생 시의 대응계획
- 보험가입
- 비상 연락 체계와 방법
- 학생집단연수에 대한 감독 활동
- 참가자의 건강과 의료에 관한 사항
- 요 보호자에 관한 사항
- 숙박 및 식사 안전
- 집단연수 계획 수립에서 계획 시행까지 전 추진과정에 대해 인파밀집 상황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비하되, 자체 점검 및 사전교육 조치
- 사람이 많이 밀집된 장소에서는 교직원 등 안내자(인솔자)가 안내하도록 하고 앞 사람과의 간격을 유지하는 등 인파사고 예방 조치
- 집단연수, 행사 운영 등의 과정에서 위험한 인파 속에서는 인파의 흐름에 따르면서 천천히 대각선으로 가장자리를 향해 움직이며 탈출로 찾기

※ 가장 가까운 출구, 모든 출구 위치 확인 필요

- 학생 집단연수를 기획하는 부서 및 학부(과/전공)는 안전교육 예방 매뉴얼을 참고하여 연수 계획을 작성하고, 학생복지팀장의 협조 후, 연수일 전일까지 전결권자의 결재 확인

* (포함사항) 방문지역, 수행 활동, 인솔자와 참가자 등

○ 현장실습 안전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재해예방 관리

-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및 성희롱 교육 등 실시
-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한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요청(실습기관)

❖ (상해보험) 대학은 현장실습 참여 학생 보호를 위해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의무적으로 가입

* 상해+후유장애회생의료비+처방조제비+배상책임+장례비+상조지원 등 보상

❖ (산재보험)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을 산재보험에 한해 근로자로 의제하여 보험 의무 가입*

*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노동부고시) 개정('18.9.11)

< 참여학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부고시) >

구분	고등학교	대학교
범위	▶ 직업계고 한정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 현장실습 한정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 4년제 및 전문대학 • 「고등교육법」상 실습학기제 등 포괄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등
대상	▶ 약 6만명	▶ 약 15만명

- 실습시간 및 기간을 고려하여 휴게시간, 휴일 보장에 관한 사항 협의
- 기계작동 및 실험기반 실습 등의 경우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의 지도·참관 하 실시

-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 근로문제 예방 및 권익보호 강화

- 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근로문제 예방을 위해 근로계약 체결 확인
 - ※ 실무직무 범위 내 노동관계법령 준수, 운영계획서 제출 시 실습기관과 협의·체결
- 학생의 현장실습 상황 모니터링 및 확인·관리
 - ⇒ 학생이 부적정한 실습사항*을 알려온 경우 실습기관에 시정요청, 중단 및 복교조치
 - * 실습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부여·지시·강요, 실습시간 기준 위반, 실습지원비 미지급 혹은 기준이하 지급, 산업 안전·재해·보건·위생·성희롱 등의 문제, 현장실습 운영조건 변경·조정 발생 등

○ 생활 안전

- 학생, 교직원, 방문객 등 등 교내 시설* 이용자의 미끄러짐·헛디딤·걸림·부딪침 등에 의한 손상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에 대한 상시적 위험요인 탐색 및 유지관리 실시

* 강의실, 강당/체육관, 도서관(실), 미술/음악/무용실, 주방/식당, 사무실/작업·실습실/회의실, 공용공간(현관/복도/계단/화장실), 체육장, 옥외 공간(조경/수경시설), 옥외 조형물 등

- 교내 체육시설, 운동기구 등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유지관리
- 교육시설 내 자동제세동기, 구급상자 등 응급처치 도구 비치 및 안내

○ 외국인 유학생 안전사고

-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의 안전한 대학생활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학생안전을 위한 대학의 안전관리활동에 관한 정보 제공 지원
- 비상시 대응절차 및 대응행동에 관한 정보 제공 지원
- 비상연락망 편성·관리 및 안내·배포
- 대학생활 관련 안전교육·훈련 제공 지원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관계기관 연락·신고

- 사고, 위급상황의 안전성 확인 및 안전성 확보
- 위험원으로 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분리·이격 조치 및 상태 유지
-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매뉴얼」에 따른 응급처치 시행 또는 치료 제공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 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사고등급평가 매트릭스 >

요인 2 학교운영에 미치는 영향 또는 관련된 행위 의 안전성·피해가능성	극심					
	심각	심각	심각	심각	심각	심각
▪ (상황) 정상적인 학교운영 중단 및 (또는) 112 또는 119 신고를 통한 즉각적 개입 요청이 필요한 행위 발생 ▪ (규모) 대규모 학생 또는 교직원 관련 사고	심각	심각	심각	심각	심각	심각
▪ (상황) 학교운영에 전반적 지장 및 (또는) 112 또는 119 신고를 통한 개입 요청이 필요한 행위 발생 ▪ (규모) 많은 학생 또는 교직원 관련 사고	경계	경계	심각	심각	심각	심각
▪ (상황) 학교운영의 중요 기능의 일시적 지장 및 (또는) 112 또는 119 신고가 필요한 행위 발생 ▪ (규모) 다수의 학생 또는 교직원 관련 사고	경계	경계	경계	경계	심각	심각
▪ (상황) 단순조치에 의한 학교운영 정상화가 가능 및 (또는) 112 또는 119 신고할 수 있는 행위 발생 ▪ (규모) 몇몇 학생 또는 교직원 관련 사고	주의	주의	주의	경계	경계	심각
▪ (상황) 학교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경미한 지장 및 (또는) 교직원의 개입과 학교장 보고가 필요한 행위 발생 ▪ (규모) 1명의 학생 또는 교직원 관련 사고	관심	관심	주의	경계	경계	심각
▪ (상황) 학교운영에 영향이 없고, 112 또는 119 신고와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고		관심	주의	경계	경계	심각
사고 등급평가 매트릭스	없음	사소	경미	중간	중대	극심
학생 또는 교직원 의 안전에 대한 영향 없음 응급처치 또는 사고 스트레스/트라우마에 대한 주변의 지원이 필요 없는 경미한 손상 응급처치 또는 사고 스트레스/트라우마에 대한 주변의 지원이 필요한 손상 통원치료 또는 사고 스트레스/트라우마에 대한 전문가 지원이 필요한 손상 입원치료 또는 사고 스트레스/트라우마에 대한 지속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손상 사망, 영구장애 또는 사고 스트레스/트라우마에 대한 광범위한 의료지원 필요						
요인 1. 학생 및(또는) 교직원의 안전에 대한 영향						

※ **사고 등급에 따른 보고 기준**

- (심각) 학교장 및 교육부에 지체없이 보고
- (경계) 학교장 및 교육부에 신속하게 보고 (1시간 이내)
- (주의) 학교장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보고 (근무일 기준 1일 이내)
- (관심)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내부 관련 문서에 기록·관리

※ **자동적으로 '심각' 등급을 받는 사고(또는 위급상황)**

- 교육활동 중 사고 : 병원진료를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
- 교육활동 외 사고 : 사망 1명 또는 부상 5명 이상의 사고
- 학교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
- 학교현장의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 학교현장에서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시
-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복구 실행 및 지원**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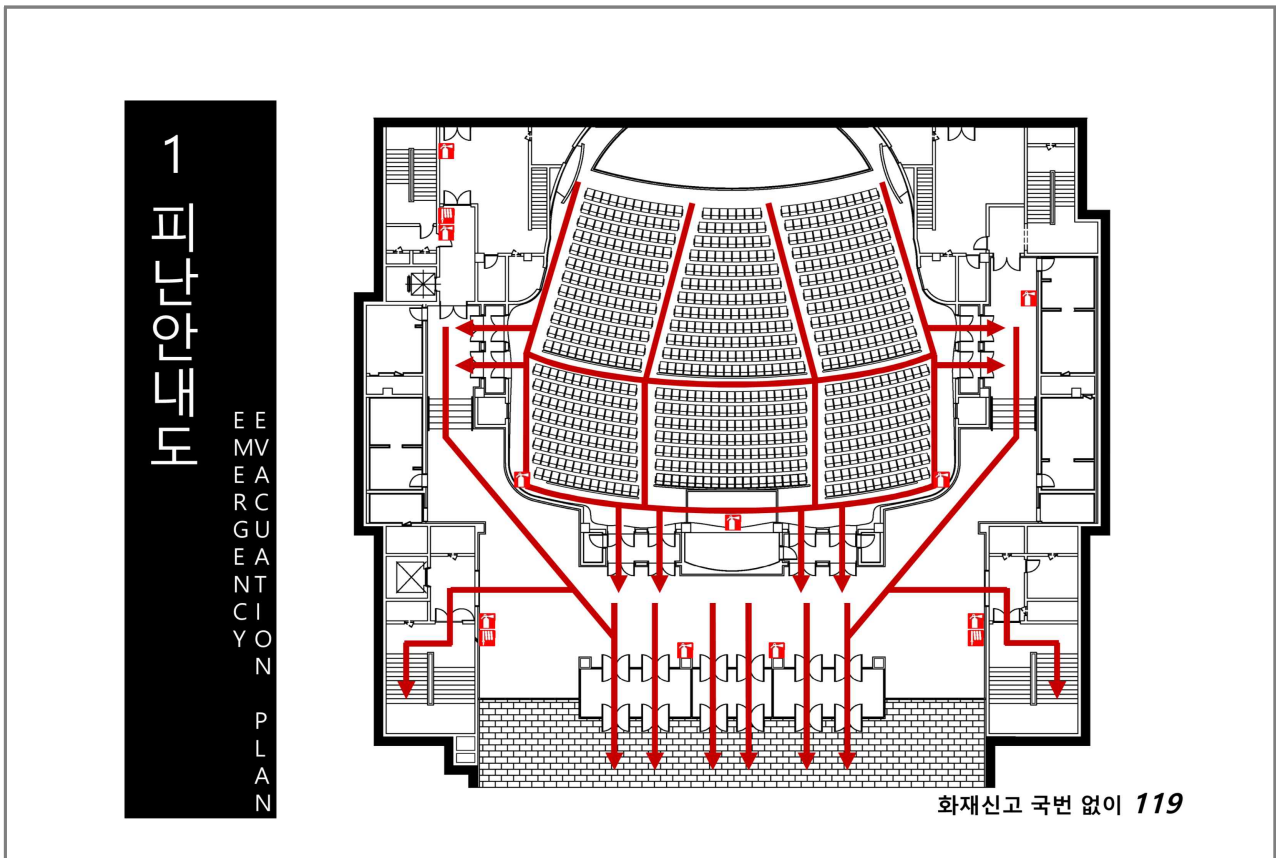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심각 (빨간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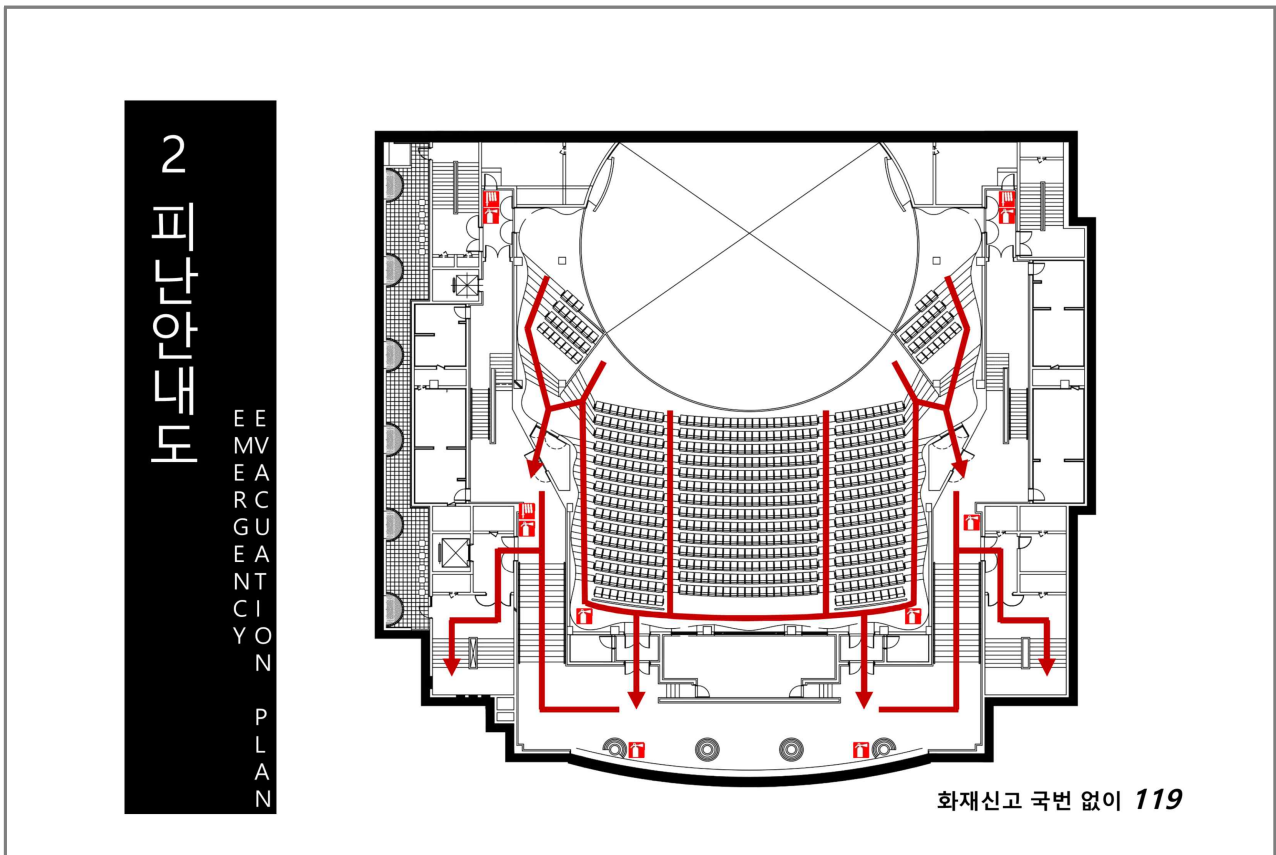
□ 대학안전사고 관리지침



□ 상명대학교 행사장(계당홀) 피난 안내도 (1층)



□ 상명대학교 행사장(계당홀) 피난 안내도 (2층)



□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

■ 음주사고 예방

- 음주 없는 학생행사가 되도록 지도하되, 음주가 불가피한 경우 주최자 사고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사전에 강구 또는 확인한 후 학생행사를 허가(만취자 발생 시 누가 관리할 것인지, 음주허용 시간, 음주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행사 신청서 또는 행사허가서에 기재)한다.
-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시 행사가 중단될 수 있음을 행사 전 학생들에게 주지시킨다.
- 인솔 교수 및 직원이 있는 학생행사의 경우 인솔 교직원은 기본적으로 금주하고, 학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 공식행사의 경우 반드시 별도의 여행자 보험을 들도록 하며, 학생들 중 행사 안전 관리자 및 책임자를 지정하여 허가토록 한다.

■ 추락사고 예방

- 숙박시설 선정 시 가급적 고층건물, 복도식 건물, 난간이 낮은 건물은 피하고 산 및 바닷가 절벽, 건물옥상 등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서는 행사를 하지 않는다.
- 행사현장에서 추락위험요인 발견 시 장소변경, 규모축소, 프로그램 변경 등의 대안을 강구해야 하며, 부득히 기존방식대로 진행할 경우 시작 전 예방법, 안전 주의의무를 충분히 안내, 고지한다.
- 건물위의 현수막 거치, 무대 조명탑 설치 등 추락위험이 있는 업무는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야 하며 학생 임의로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다.
- 베란다, 무대 등이 추락, 미끄러짐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인지 사전 확인하고 시건장치 등 출입통제방안을 마련, 시행한다.
- 베란단에 탁자, 의자 등 기물을 내놓아 추락 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한다.

■ 화재사고 예방

- 실내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금연토록 한다.
- 가스렌지 또는 휴대용 가스버너 사용 시 행사 안전관리자가 사용전후에 가스관 훼손여부 및 불판의 적정 크기 등 안전여부를 확인 한다.
- 기온이 높은 여름철 야외 활동시 부탄가스를 햇볕에 노출시킬 경우 폭발 위험성이 있음을 주지시킨다.
- 휘발유 등 인화물질을 절대 행사장내로 반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 캠프 파이어 등 불을 피우는 행위는 단대, 학과장 및 인솔직원의 사전허가를 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한다.
- 학생회실, 학생휴게실, 동아리방, 학과 사무실 등에서 개별난방 및 취사 등 화재위험이 높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 전기 안전사고 예방

- 행사관리는 숙박시설의 전기제품이 불량이라고 판단되면, 해당 숙박시설에 이를 신고하고 학생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 행사안전관리자는 학생들의 전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거나, 늘어진 전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교육한다.
- 학생행사시 숙박시설에 정전이 발생할 경우 수동 개폐기의 퓨즈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 행사 장소에 침수가 발생한 경우 전시설물에는 절대 접근하지 말고 한국전력 (국번 없이 123)에 신고한다.

■ 호우 및 태풍 시 안전사고 예방

- 안전관리책임자는 행사 개최 전 또는 행사 중 수시로 기상예보 및 호우상황에 주의를 기울인다.
- 행사 출발 전 호우 및 태풍예보(또는 경보) 발령 시에는 원칙적으로 학생행사를 유보하고 행사 중 발령 시에는 행사중단 또는 실내행사로 변경한다.
- 호우 및 태풍예보(또는 경보) 발령사실을 참여 학생에게 즉시 알리고 실내대기, 행동요령 등을 반드시 안내한다.
- 행사 진행 중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침수나 산사태 위험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위험요인 발견 시 신속히 이탈하도록 한다.

■ 익사 사고 예방

- 수영수업 및 얇은 곳 물놀이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심이 깊은 계곡, 바다에서의 수영 행사는 전면 금지한다.
- 해당 수영지역에 인명구조요원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구명튜브 등을 반드시 비치한다.
- 익사사고에 대비하여 항시 수영자들을 관찰할 수 있는 인력을 별도로 배치한다.
- 심장마비 예방을 위해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 물을 적신 후 들어가도록 안내한다.
-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있음을 학생들에게 주지시킨다.
- 수영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에는 휴식을 취하도록 학생들에게 사전 안내한다.
- 장시간 수영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혼자 수영하지 못하도록 한다.
- 행사책임자는 학생들이 물에 빠뜨리기, 물먹이기, 먼바다로 데려가 파도파기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지도한다.

■ 산행사고 예방

- 야간 산행은 가급적 삼가고, 반드시 해지기 한두 시간 전에는 산행을 마친다.
- 산행의 경우 일행 중 가장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산행을 무리하게 하지 않는다.

- 안전관리자는 기상이변 등을 대비하여 랜턴, 우의, 휴대전화(예비 배터리), 상비약품을 준비한다.
- 지정된 등반로 외의 산행을 삼가고, 길을 잃었을 때에는 계곡을 피하여 능선으로 산행한다.
- 음주로 인한 산행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산위에서는 음주를 삼간다.

■ 낙뢰 사고 예방

- 낙뢰가 예상되면 학생들을 건물 안, 자동차 안, 움푹 파인 곳이나 동굴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킨다.
- 낙뢰 시 야외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저지대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다.
- 낙뢰 우려지역에서는 행사를 개최하지 말되, 불가피하게 행사를 하는 경우 낙뢰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키 큰 나무 밑은 낙뢰가 떨어지기 쉬우므로 피할 것, 등산용 스틱이나, 우산같이 긴 물건은 땅에 뉘어 놓고, 몸에서 떨어뜨릴 것, 산위 보다 낮은 곳이 안전하고, 건물 안이나 자동차 안으로 대피 등)

■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출입 통제

- 서울캠퍼스 전역이 경사가 매우 심한편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사고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출입을 통제한다.

■ 일반적인 응급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 119 또는 1339로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 119종합상황실은 유선전화, 휴대전화 구분 없이 119번을 누르면 됨.
- 응급진료에 관한 정보 안내를 받으려면 1339번으로 연락한다.
※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유선전화:1339, 휴대전화 : 지역번호 + 1339)
- 응급 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말하고, 지시 내용에 따라 응급처치를 한다.
- 환자이송 등 긴급조치 후 학생복지팀과 학생의 학과로 연락한다.

■ 음주사고 시 대처요령

- 만취학생이 발견 시 구급차로 이송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다.
- 절대 혼자 두지 않고, 119 구급차가 오거나 학생이 정상을 되찾을 때까지 안전 관리자가 옆에서 보호하고 상황을 주시한다.
- 구토 등으로 기도가 막히는지 여부를 관찰하고 용변, 흡연, 식음 등을 위해 움직이려 할 때 충돌, 추락 등 발생 가능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화재사고 시 대처요령

- 화재현장 목격 시 불이 났다는 것을 119와 주변에 신속하게 알린다.
- 전화로 119에 신고하여 신속히 소방차가 출동하게 요청한다.
(예: 여기는 종로구 수송동 100번지 한국 통신 뒤 6층 건물의 지하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 화재 신고 후 화재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함
 - 전기스위치를 내린다(끈다)
 - 석유난로 등에 의한 화재일 때는 담요나 이불을 물에 적셔서 뒤집어씌운다.
 - 가스 화재는 용기 및 배관의 밸브를 잠근다.
- 화재신고 등 기본적인 조치가 끝나면 소화기나 물을 이용하여 화재진압을 위해 노력한다.
- 감전위험이 있으므로 전기 화재에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 가스화재는 폭발성이 있으므로 갑자기 문을 열거나 전기 스위치 등을 조작하지 않는다.
- 화재 시 가장 위험한 것은 불이 아니라 유독가스라는 것을 유념하고 유독 가스 발생시 입과 코를 막고 자세를 낮춘 상태에서 해당 장소를 신속히 벗어난다.
- 옷에 불이 붙으면 그 자리에서 뒹굴어 끈다.
- 엘리베이터를 탄 상태에서 전기가 나가 작동이 중단되면 바로 연기 속에 갇히게 되어 위험해지므로 화재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는다.
- 화상 시 구급차가 올 때까지 찬물이나 찬수건 또는 얼음주머니를 상처부위에 대고 열기를 식힌다.

■ 전기 안전사고시 대처요령

- 감전 시 신속하게 구급차를 부르고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 전기감전의 정도가 매우 심하여 심장과 호흡이 정지되었다면 곧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 감전 시 전기 감전의 해당 상처부위는 깨끗한 헝겊으로 덮어 둔다.

■ 호우 및 태풍시 대처요령

- 호우 및 태풍 시에는 간판, 창문 등이 날아가 부상할 위험이 있으므로 행사책임자는 학생들은 안전한 실내에 대피토록 하여야 한다.
- 호우 시에 행사 참가자는 학생들이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 행사책임자는 호우 시에 학생들이 가로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 익사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즉시 인명구조요원 또는 119에 신고한다.
- 물에 빠진 사람을 물 밖으로 꺼낸 후에는 신속히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 수영실력이 없는 사람이 구조를 위해 물에 뛰어들지 않도록 한다.

■ 산행사고시 대처요령

-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위치 지점을 확인한 후 정보를 119상황실에 제공해 구조대원들이 신속하게 사고위치에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 함부로 응급환자의 부상부위를 만지지 말고 구급대원의 응급처치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 낙뢰사고시 대처요령

- 낙뢰 시 전류가 잘 흐르는 우산과 같은 알루미늄이나 쇠붙이 등은 만지지 않는다.
- 몸을 최대한 낮게 웅크리고 엎드린다.
- 만약 낙뢰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환자의 의식이 명료해 보이더라도 감전(전기화상)은 몸의 안쪽 깊숙이까지 화상을 입고 있는 중증의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속히 119에 연락해 인근 응급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조치한다.
- 의식이 없으면 호흡을 확인하고 호흡이 없으면 심폐 소생술을 실시한다.
- 감전 후 대부분의 환자가 전신 피로감을 호소하게 되며 불안정한 심장상태는 조그마한 움직임에 의해서도 심정지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구급차 이송 시에도 유의해야 한다.

■ 교통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항목	점검(교육)내용	확인
차량 및 운전자	차량서류	차량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였습니까?	
		정기검사필 관련 서류, 계약차량과 동일차량 여부(차량번호)를 확인하였습니까?	
	차량상태 점검	재생타이어 사용여부를 확인하였습니까? (앞 타이어 재생활용은 불법)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는 정상 작동합니까?	
		개문 가능한 창문위치를 확인하였습니까?	
		소화기 비치 여부 및 위치를 확인하였습니까?	
	운전자	비상 탈출용 망치 비치 및 위치를 확인하였습니까?	
		운전자 적격 심사여부는 확인하였습니까?	
		운전자의 음주 여부는 확인하였습니까?	
		차량 간 이격을 두고 운행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학생	안전교육	안전 벨트 착용을 안내하였습니까?	
	비상대처	위급상황을 대비하여 소화기, 비상망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까?	
구급약	약품비치	멀미약, 소화제, 두통약 등 비상약은 구비하였습니까?	
		보호가 필요한 학생 상황은 파악하였습니까?	
연락망	비상 연락망	차량운전자와 탑승 차량별 대표자 연락처를 확인하였습니까?	
		유사 시 학교, 소방서(119), 경찰서(112)에 연락	

■ 숙소점검 체크리스트

단계	점검사항	확인
답사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행사 당일 수용인원이 적정 숙박 정원을 넘어서지는 않습니까?	
	유리 창문의 안전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2층 이상의 경우 완강기가 설치되어 정상 작동합니까?	
	지자체 안전점검 등을 받았는지 확인 하였습니까?	
	학생들의 이동통로나 비상구는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습니까?	
	학생들에게 방송 등 안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도착후	외부인이 숙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잠금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필요한 구급약품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 화재예방 체크리스트

단계	점검사항	확인
답사	2층 이상의 경우 완강기가 설치되어 정상 작동합니까?	
	소화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소방시설 완공 검사필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숙박 및 교육 시설의 소방안전 점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도착후	위급 사항 발생 시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추었습니까?	
	현장에서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대피 방법을 안내하였습니까?	
	소화기 및 완강기의 위치 및 사용법을 학생들에게 안내하였습니까?	

■ 해외여행 시 점검 체크리스트

단계	점검사항	확인
답사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사이트 (http://www.0404.go.kr) [위기상황별대처 매뉴얼]을 숙지하고 확인하였습니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하였습니까?	
	개인의 건강상황을 파악하고 조치하였습니까?	
도착후	교통, 숙소, 화재 등 안전관련 점검사항을 체크리스트로 확인하였습니까?	
	약국, 병원등 위치를 확인하였습니까?	

안전수칙준수 선언문 (학생/개인용)

1. 나는 행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나는 자신의 안전은 자신 스스로 지킨다는 생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
3. 나는 행사 진행 중 안전관리요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4. 나는 위험요인을 발견 할 경우 안전요원 등에게 즉시 알리고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나는 나의 주량을 알고 과도한 음주를 하지 않겠습니다.
6. 나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위 선언 내용을 어김없이 준수할 것이며,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학 과:
학 번:
성 명:

(서명)

안전수칙준수 선언문 (학생/단체용)

1. 나는 행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나는 자신의 안전은 자신 스스로 지킨다는 생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
3. 나는 행사 진행 중 안전관리요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4. 나는 위험요인을 발견 할 경우 안전요원 등에게 즉시 알리고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나는 나의 주량을 알고 과도한 음주를 하지 않겠습니다.
6. 나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위 선언 내용을 어김없이 준수할 것이며,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학과	학번	이름	서명	학과	학번	이름	서명

학생 관련 사건·사고 발생 보고

(20 . . .)

보고서:

학부(과)장 · 전공주임

■ 사고일시:

■ 사고장소:

■ 사고자 인적사항

- 성 명: (성별: 연령: 만 세)
- 소 속: 대학 학과
- 학 번: (학년)

■ 사고경위(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 사고자 및 피해자 인적사항:
- 사고일시:
- 사고장소:
-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 사고발생 이유:

■ 조치결과

[illegible][illegible]

2 교육시설 안전사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등

※ (관련 기준)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관리팀	팀장	구성본	02-2287-7058	주관부서
팀원	관리팀	주임	함준수	02-2287-7173	
팀원	관리팀	담당	강홍식	02-2287-7101	
팀장	총무인사팀	팀장	안종혁	02-2287-7044	협조부서
팀장	학생복지팀	팀장	홍영숙	02-2287-7025	

□ 위험요인

- **(교내시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학교시설의 건설, 운영, 해체 등 건축물 생애주기 전(全)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물파손 및 인명피해
 - 건물 구조·성능, 교육활동 공간·환경, 건물 마감재료 및 기계·전기 설비 등 교육시설 주요 구성요소의 파손 및 기능저하에 따른 이용제한 및 학습지원 차질 초래
- **(주변시설)** 학교경계로부터 50미터 범위 내의 시설물(건물, 설비, 조경, 환경시설 등)의 설치·유지·보수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학교시설 및 학교구성원 피해
 - 학교 인접 공사장의 가설공사, 굴착공사, 작업차량·장비 이동·운용 등으로 학교 시설 파손·이상 징후 발생과 학교구성원 통학안전 위협 및 옥외 학습활동 제한

□ 피해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 원인분석

○ 교육시설 안전사고 발생된 사례 없음

- 「교육시설법」 및 관련 기준·지침의 제정에 따른 신규 정책 및 제도의 도입·시행으로 교육시설 안전사고는 감소추세이나, 최근 중대한 공사장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교육시설 조성부터 유지관리까지 안전점검·관리 관리강화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교내시설) 교육시설의 계획·설계단계부터 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적기에 취득하고, 안전·유지관리점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의 정기·중점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안전성능 유지관리

※ 관련 매뉴얼 : 교육시설안전 인증 신청가이드(교육부, 2022)

교육시설 안전점검 매뉴얼, 안전·유지관리 매뉴얼(교육부, 2022 예정)

- (주변시설) 학교인접시설 공사 착공 전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 안전 위협 시 인·허가권자에게 안전확보 및 시정요청

※ 관련 매뉴얼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실무편람(교육부, 2022)

□ 안전관리 주요대책

1. 교육시설 안전점검 내실화

- 계절별(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전수 점검 실시(연 3회)
- 재해취약시설 지정 점검으로 특별관리

계절별	재해취약시설
해빙기	- 축대·옹벽, 절개사면, 공사장, 노후시설(재난위험시설) 등
여름철	- 침수위험시설, 수련시설, 공사장, 노후시설(재난위험시설) 등
겨울철	- 실험실습실, 가스 등 위험물질 취급시설 등 화재 취약 시설 - 기숙사 등 학생이 숙식하는 시설 및 체육관 등

2. 각 부서별 일상 점검 강화

- 매월 안전점검의 날에 시설 점검 후 시설물 유지점검표 작성
- 분기별 시설물 점검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 보고

3.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통한 '학교 원스톱(one-stop) 점검'추진

- 관련 전문가등으로 점검단을 구성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예산 우선 지원을 통하여 시설의 종합적 개선 추진

4. 노후시설 정밀점검 등 안전진단 정례화

- 40년 이상 경과 노후시설물(옹벽등 시설 포함)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외부전문가에 의한 정밀점검으로 안전성 확인

※ 정밀점검 결과 후속조치

- B,C급 : 균열 등 결함보수(특별출연금 등 요청)
- D급 : 정밀안전진단 실시, 재난위험시설 지정 심의 및 해소계획수립
- 신규지정 재난위험시설은 당해 연도 예산을 확보하여 해소토록 노력

5. 내진보강 추진

6. 비상차량의 교내 접근성 개선

- 학교 구조와 시설물 등에 의한 응급차량(앰불런스, 소방차, 경찰차 등) 접근성이 제한되는 장소를 단계적으로 해소

□ 석면관리 주요대책

1. 석면 해소 중기 계획

- 안전한 석면해체·제거를 위해 단계별 해체

2. 양질의 학교 석면해체·제거업자 확보를 위한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업체 선정감화

3. 학교 석면해체·제거공사 안전 확보 방안 이행

- 석면 건축물의 학교석면관리 매뉴얼에 따라 안전관리 실시
- 학교 관계자(담당자) 전문교육 실시 및 설명자료 마련·안내
 - 내용 : 석면 위해성, 석면해체·제거공사 절차, 추진계획 등
- 잔재물 조사 강화 : 먼지시료 채취·분석 도입
 - 고품시료(편광현미경 분석)⇒고형시료(편광현미경분석)+먼지시료(전자현미경분석)
- 석면 철거 전·후 정밀 청소, 최종 공사 완료 후 대청소
- 소방, 창호 등을 사유로 석면예산 편성 시 냉난방기 동시 교체 추진
- 석면공사 추진 시 석면지도 오류 검증 ⇒ 누락된 석면 발견 시 집행 잔액 활용 또는 긴급예산 투입 등으로 즉시 해소

3 연구실사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5조~제7조, 제9조, 제12조~제14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9조 등

※ (관련 기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안전보건센터	센터장	구성본	02-2287-7058	주관부서
팀원	안전보건센터	담당	권우창	02-2287-7020	
팀원	안전보건센터	담당	장재우	02-2287-6422	
원장	대학원	원장	오동일	041-550-5323	협조부서
학장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	최연실	02-2287-5041	
학장	사범대학	학장	장덕호	02-2287-5081	
학장	융합공과대학	학장	황민철	02-2287-5395	
학장	문화예술대학	학장	이정아	02-2287-5161	
처장	산학연구처	처장	유훈	02-2287-5228	

□ 위험요인

- (연구실사고) 화학·물리·생물학적 위험요인 등으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연구활동 종사자의 생명·신체상 손해 및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의 훼손 발생
- ※ [사고유형] 화학, 가스, 전기, 생물, 기계, 기타(화상, 상처출혈, 유해광선 접촉) 등 13개 사고 유형
- 연구활동 중 연구실 내 화학물질·가스 누출·접촉 및 폭발, 감전·전기화재, 병원성 물질 유출, 끼임·절단 등의 사고발생으로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위협

□ 피해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 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 원인분석

○ 연구실 사고 발생된 사례 없음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활동 확대 등으로 연구실 안전사고는 감소 추세이나, 연구실 안전사고 유발요인 및 학생안전 위협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관리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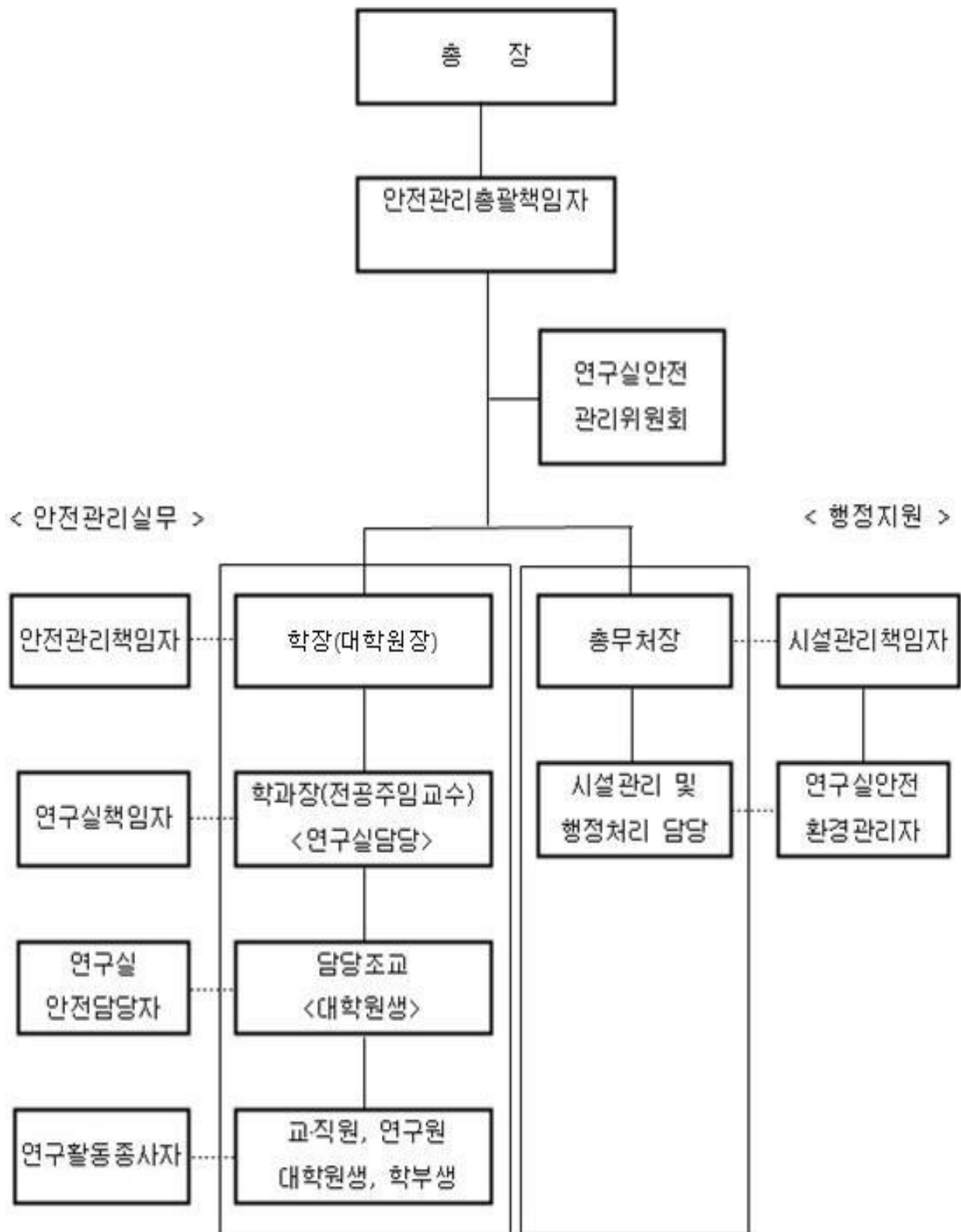
- (연구실사고) 연구실 사고 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유형(6개 분야, 13개 항목)을 분류하고, 각 사고 유형 별 예방·대비, 대응, 복구 단계에 대한 연구책임자와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등 직무별 대응·행동요령 및 책무 제시

※ 관련 매뉴얼 : 연구실 사고 비상대응매뉴얼(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 연구실 사고 피해 규모에 따른 분류기준 및 대응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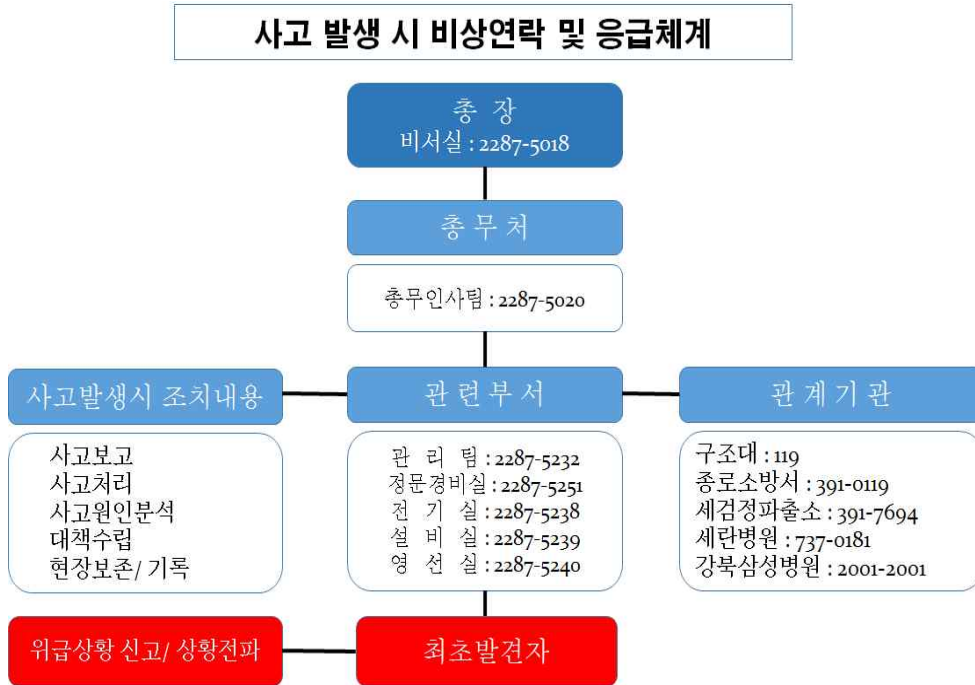
구분	분 류 기 준	대응 수준
중대 연구실 사고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 1.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3. 부상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4. 영 제13조 각 호에 따른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 — 영 제13조 — 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산업 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 등 유해·위험물질의 누출 또는 관리 부실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부실 3.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유해·위험설비의 부식·균열 또는 파손 4. 연구실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반침하·균열·누수 또는 부식 5.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병원체의 누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대학·연구기관
일반 연구실 사고	중대 연구실사고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고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 1. 인적피해 : 병원 등 의료 기관 진료 시 2. 물적피해 : 1백만원 이상의 재산 피해 시(취득가 기준)	대학·연구기관
단순 연구실 사고	인적·물적 피해가 매우 경미한 사고로 일반 연구실사고에 포함되지 않는 사고	대학·연구기관

□ 연구실 안전관리 조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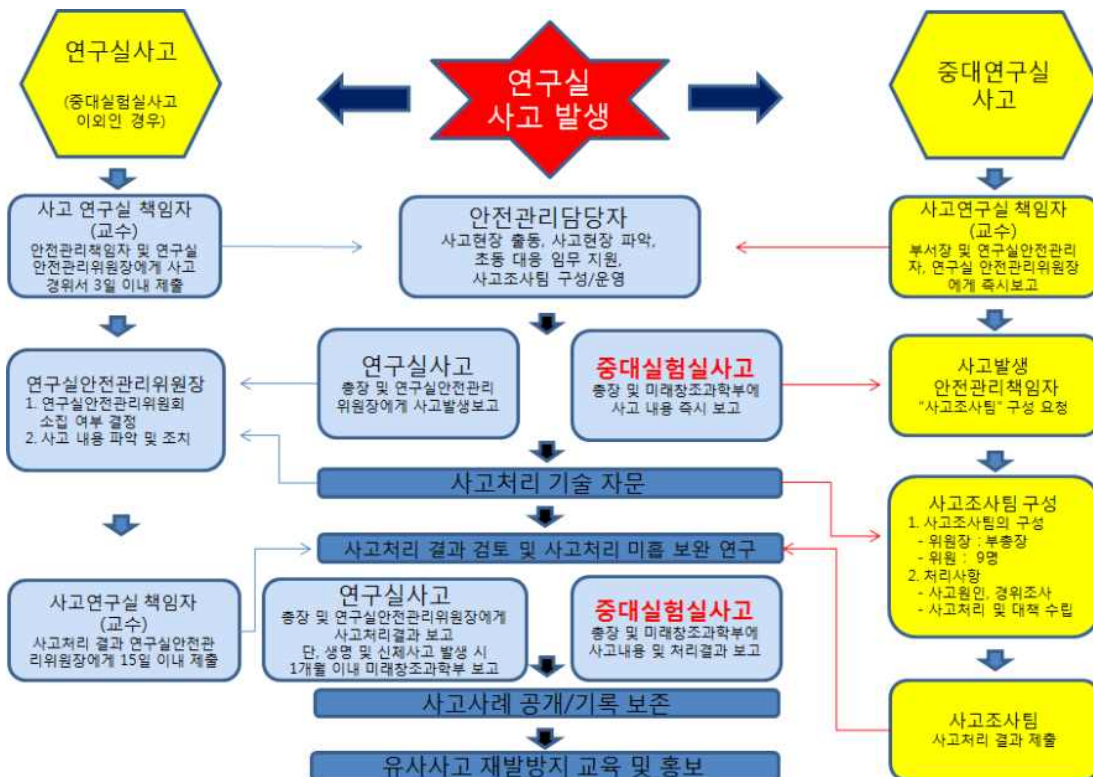


□ 연구실 사고대응 단계별 수행업무

1. 사고발생에 따른 비상연락망 및 응급처리 체계도



2. 연구실 사고 처리 흐름도



□ 사고보고 체계

- 연구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최초 발견자는 연구실책임자에게 즉시 보고
- 연구실책임자는 보고체계에 의해 안전담당부서에 사고 발생 사항을 통보하고 필요 시 소방서 및 병원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
- 안전담당부서는 연구주체의장에게 사고 상황 보고
-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
 - 가. 사고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 나. 사고조치 및 전망
 - 다.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일반연구실 사고 발생 시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실 사고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

3. 감염병 확산

①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2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의2, 제29조, 제29조의3, 제23조의3, 제34조, 제35조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총무인사팀	팀장	안종혁	02-2287-7044	주관부서
담당	총무인사팀	담당	정민영	02-2287-6452	
팀장	기획예산팀	팀장	김수영	02-2287-7049	협조부서
팀장	교원인사팀	팀장	박성진	02-2287-7070	
팀장	학사운영팀	팀장	이호선	02-2287-7054	
팀장	학생복지팀	팀장	홍영숙	02-2287-7025	
팀장	대학원교학팀	팀장	권용화	02-2287-7056	
팀장	미래교육원교학팀	원장	류현승	02-2287-5367	
팀장	학술정보지원팀	차장	임재선	02-2287-7065	
팀장	국제학생지원팀	팀장	유창섭	02-2287-7059	

□ 위험요인

- (코로나-19)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비말, 호흡기, 눈·코·입 점막 침투로 전염되는 호흡기 감염질환
- 코로나-19 확진자 증대,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 감염병 상황 장기화로 인한 원격 수업 및 비대면 교육으로 학습·정서적 결손발생 및 지역간·계층간 학습격차 심화

□ 피해현황

구 분	2021	2022	2023	평균
감염자 수	65	827	29	307
인명 피해(사망)	-	-	-	-

□ 원인분석

- 질병관리청, 종로보건소 등 조사 결과
- 교내 학생, 교직원의 코로나-19 감염은 감소추세이며, 밀집시설 이용에 대하여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행동수칙 교육·관리강화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비대면 교육)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동안 대학의 각종 활동(수업·행사·자치활동·운동부 훈련 등)은 가급적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거나 연기를 원칙으로 학사 운영
 - (대면 교육)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환경 위생관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하고, 유증상자 조기 발견·조치 등 대학 내 코로나-19 감염 전파·확산을 방지
- ※ 관련 매뉴얼 :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교육부, 2021)

《 감염병 확산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감염병을 예방 위한 안내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코로나19 최신 정보 및 국가·지역 발생 정보 등을 확인하여 학생·교직원 등에 안내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및 등교하지 않도록 학생 및 교직원에게 사전에 적극 안내 및 관리 철저
 -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학생 및 교직원이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홍보 실시
- 감염병 예방수칙 포스터, 코로나19 행동수칙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물을 대학 내 게시판 등 주요장소에 부착
- 기저질환(만성질환, 당뇨 등)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교육·안내

〈 작성예 : [안내사항] 누구나 해야 할 일, 누구도 하지 말아야 할 일 〉

❖ 누구나 해야 할 일

■ 다음의 경우 반드시 비누와 물 또는 손소독제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 ① 운동이나 쉬는 시간 후, ② 식사하기 전, ③ 등교 하자마자,
- ④ 화장실 이용 후, ⑤ 집에 도착하자마자, ⑥ 마스크 착용 전·후

■ 만일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다면

- ①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② 사용한 휴지는 바로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버린 후,
- ③ 반드시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깨끗이 손씻기

❖ 누구도 하지 말아야 할 일

- 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때 등교하는 것 ②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는 것
- ③ 컵, 물병, 접시, 필기도구, 수건 등 공유하거나 음식을 나눠 먹는 것

- 노래방, PC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이용) 및 소모임 금지 또는 자제 등에 대한 학생 교육 및 생활지도 철저
- 학생, 교직원 등이 등교(출근) 전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 대학(지도교수, 복무담당자 등)에 미리 알리도록 안내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대학 구성원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담은 대응계획(학생 심리지원 포함)을 수립·시행 하여 학교 내 직원관리, 환경관리, 상황발생 즉시 대응 등 업무 수행

* 학교의 코로나19 대응조직을 구성하여 업무를 세분화하고 역할을 정확히 숙지

- 대응계획에 따라 코로나19 총괄담당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코로나19 비상 관리조직을 구성하여 감염예방 활동 수행

※ 임신부,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천식, 만성폐질환자) 등은 담당자에서 제외

- 비상관리조직, 대학본부, 단과대학, 대학원, 대학보건실 등이 코로나19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락 및 보고 체계 구축

- 담당자는 대학 내 유증상자 발생 상황을 관리하고, 교육부·유관기관(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 등) 연락처를 파악하여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상황 발생 즉시 대응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방역, 소독 등 환경·위생 관리

- 대학 내 시설물, 통학버스, 기숙사 등 주요 공간 청소, 소독, 환기 강화

- 구성원이 자주 접촉하는 표면(손잡이, 키오스크, 각종 버튼, 수도꼭지 등)은 매일,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음수대 등은 수시 소독 실시

※ 청소·소독은 1일 1회 이상, 환기는 1일 3회 이상 권고

-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며, 개방하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주기적으로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 철저

※ 에어컨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터도 자주 청소·교환 실시

- 대학 내 시설 및 화장실 등에 손 세정제, 비누 등을 충분히 배치

※ 엘리베이터 내부, 문 손잡이, 키오스크 근처 등에 손 세정제, 일회용 장갑 등 비치

- 곳곳에 휴지와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여, 기침이나 재채기 시 사용한 휴지를 깨끗하게 버릴 수 있도록 조치

- 학생, 교직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용역업체 및 입주업체 직원, 방문객 등에 대한 발열,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 철저

- 외부인(방문객)의 건물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 확인 후 허가(출입 등록대장 작성·관리)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유증상자 대기를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 △(실내) 이동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1층에 마련 (실외) 외기에 영향받지 않도록 천막 등 활용

- 보건용 마스크, 체온계 등 방역물품은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비축기준을 참고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 체온계, 보건용(KF94, N95) 마스크, 의료용 장갑, 손소독제, 살균티슈 등

참고 자료 상명대학교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발생시 후속절차 변경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출근기준
- 학과 및 부서별 확진자 발생시 조치
 - 소독실시(관리팀에 확진자 발생에 따른 소독 요청)
 - 확진자가 발생한 부서 및 학과에서 붙임의 확진자 보고 서식 및 재택근무 계획서를 작성하여 총무인사팀에 공문으로 제출

구분	대학지침	변경사항	개인 조치사항
가. 본인이 확진자 인 경우	- 7일간 재택근무	- 5일간 재택근무	- 확진자 보고 서 식 제출 - 재택근무 계획서 제출(부서장 전결)
나. 동거인이 확진 자인 경우	- 동거인 확진자의 확진일로부터 3일 간 재택근무(해당 기간 내에 PCR검 사 실시) - 검사 결과가 음 성일 경우 4일 차부터 출근	- 변경사항 없음(3 일간 재택 근무)	- 재택근무 계획서 제출(부서장 전 결) - 동거인 확진자의 확진일로부터 6~7일차에 자가 검사 권고
다. 백신 공가	- 개인 연차 사용	- 변경사항 없음	- 백신 접종시 개 인 연차 사용

4. 범죄

1 일반범죄

폭력행위처벌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폭력행위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기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총무인사팀	팀장	안종혁	02-2287-7044	주관부서
팀원	총무인사팀	담당	정민영	02-2287-6452	
팀장	교원인사팀	팀장	박성진	02-2287-7070	협조부서
팀원	교원인사팀	담당	김지수	02-2287-6458	
팀장	학생복지팀	팀장	홍영숙	02-2287-7025	
팀원	학생복지팀	담당	서승연	02-2287-6454	

□ 위험요인

- **(폭행 행위)**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하는 폭력행위

※ (집단)폭행, 협박, 강요, 체포, 감금, 상해, 공갈 등

- 학교 구성원간의 폭행, 외부인에 의한 폭행 등 학교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발생하는 폭력행위와 부적정한 대처로 범죄 피해자 발생 및 잠재적 범죄자 양산 초래

- **(주거 침입)** 사람이 거주·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등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

※ 적법하게 주거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이사에 반해 타인의 주거·관리하는 시설 침입·점거

- 학교시설에 대한 외부인의 무단침입·점거,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범죄발생으로 학교구성원의 안전·신변 위협 및 학습권 침해

□ 피해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 수	-	-	-	-	-	-
피해자 수	-	-	-	-	-	-

□ 원인분석

○ 일반범죄 발생된 사례 없음

- 교내 폭행 행위, 외부인 침입 사례 등의 일반범죄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피해자 수는 증가되고 있는 상황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예방기법의 도입과 방법 시설의 확충,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범죄예방) 범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설계*를 시행하고, 순찰·신고 및 보고 체계 구축, 폭행사고 발생 시 초동대처요령 및 행동 매뉴얼 수립·교육 등의 사전대책방안 마련

*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확보, 활동의 활성화 등 CEPTED 기법 적용

- (대응조치) 범죄피해자·목격자의 신고·비상벨 작동 시 학생지원센터, 통합보안실 등 해당 지원부서 즉각 출동·조치 및 유관 기관(경찰서·소방서 등) 신고

- (회복지원)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존엄성 보장과 명예·사생활 보호 및 회복·지원을 위해 범죄발생 초기부터 다양한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전개

※ 관련 매뉴얼 : 제4차('22~'2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법무부, 2021)

《 [범죄공통] 범죄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예시)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교내 범죄

- 대학구성원의 신변안전을 위해 전문경비업체에 의한 교내 출입통제 및 범죄 예방 순찰 실시

- 대학생활과 대학행정을 위한 교육시설의 개방 및 접근통제 관리
- 범죄 예방을 위한 교내 순찰 활동
- 신변위험에 대한 행동요령 마련 및 홍보
- 음주, 흡연, 마약류 사용 등에 관한 규제와 교육 프로그램
- 사고 현장에서의 범죄 피해자 보호
- 범죄 발생 신고 접수·대응
- 범죄 발생 시 자체적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제안

- 범죄 사건 발생 데이터 수집·관리

- 범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설계(CEPTED) 기법 적용

- **(자연적 감시)**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

- **(접근통제)** 출입문, 담장,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 등 '접근통제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여 외부인의 진·출입을 통제

- **(영역성 확보)** 공간배치와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소유권 및 관리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

- **(활동의 활성화)** 일정한 지역에 대한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상 공간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설물 및 공간 계획을 하는 것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증거 기록

- 학생(또는 교직원)이 다른 학생(또는 교직원)에게 해를 주었다고 신고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이들이 피해자와 접촉할 수 없도록 조치

- 목격자(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한 지원 제공

- 물리적 또는 문서상의 증거를 보존·기록

- 목격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개별 인터뷰를 하기 전까지 이들을 서로 분리함으로써 이들 증언의 온전성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 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주의 (노란색)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심각 (빨간색)

※ 제4차('22~'2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법무부, 2021)

참고 자료 [공통자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계획 비전·목표 참조

비전	범죄피해자의 인권존중 및 인간다운 삶의 보장 실현		
목표	“원상회복”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연속적 지원서비스 제공	“실질적 참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법적 지위 강화와 참여기회 확대	“평온하고 안전한 삶으로 복귀” 신변 및 정보보호를 통한 2차피해와 재피해 예방
추진 정책	피해회복 지원의 내실화 및 대상 확대	- 범죄 발생 직후 응급위기 지원 강화 - 피해회복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 - 경제적 지원(구조금 포함)의 실질화 및 효율적 집행체계 구축	
	가해자의 책임인식 및 피해배상 촉진	- 형사조정제도의 실질화 - 가해자의 피해배상 촉진	
	형사절차 참여기반 강화 및 참여 기회 확대	- 피해자 정보접근권 확대 및 강화 - 법률조력의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피해자의 형사절차 진술권 강화	
	피해자의 정보 및 신변보호와 2차피해 예방	- 피해자의 정보보호 강화 - 피해자의 신변보호 강화 - 형사절차에서의 2차피해 예방	
	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및 정책기반 강화	- 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 정책기반 강화	

2 성범죄

양성평등기본법 & 성폭력처벌법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같은 법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0조, 제11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센터장	인권센터	센터장	김동민	02-2287-7013	주관부서
팀장	인권센터	팀장	홍영숙	02-2287-7025	
팀원	인권센터	담당	김도훈	02-2287-7027	
소장	인권상담소	소장	김평강	02-2287-5140	
팀원	인권상담소	담당	한지수	02-2287-5369	
팀장	학생복지팀	팀장	홍영숙	02-2287-7025	협조부서
팀장	총무인사팀	팀장	안종혁	02-2287-7044	
팀장	교원인사팀	팀장	박성진	02-2287-7070	
팀장	대학원교학팀	팀장	권용화	02-2287-7056	

□ 위험요인

- (성희롱 행위)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학교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가 성적 언동,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등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과 성적 요구를 일삼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자행하는 등 개인의 존엄 경시 및 인권 유린상황 발생

- (성폭력 범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가해 행위

※ (유사)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데이트성폭력, 스토킹, 통신매체 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 강간, 강제추행,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성폭력 범죄 행위로 성적 약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위협

□ 피해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 수	성희롱	-	-	-	-	-	-
	성폭력	-	-	-	-	-	-
	계	-	-	-	-	-	-
피해자 수	성희롱	-	-	-	-	-	-
	성폭력	-	-	-	-	-	-
	계	-	-	-	-	-	-

□ 원인분석

○ 성범죄 발생된 사례 없음

- 성폭력 발생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성희롱 행위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학교 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과 상담·신고 등 고충처리 전담부서 설치·운영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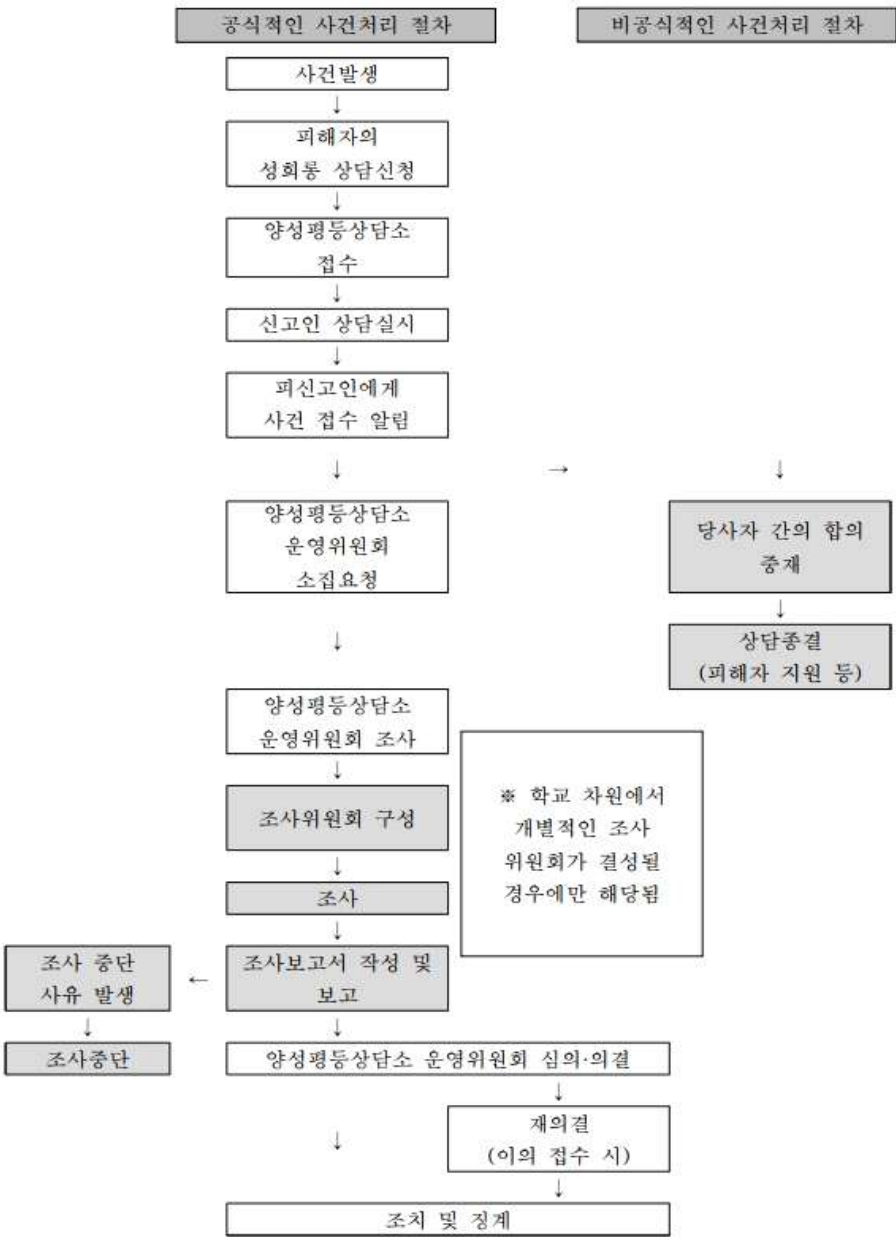
- (성희롱 행위) 성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대응 체계 구축·운영
- (성폭력 범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상시 예방·점검 창구 마련을 통한 범죄 사전 예방과 상담-조사-심의-조치 등 전(全) 단계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기반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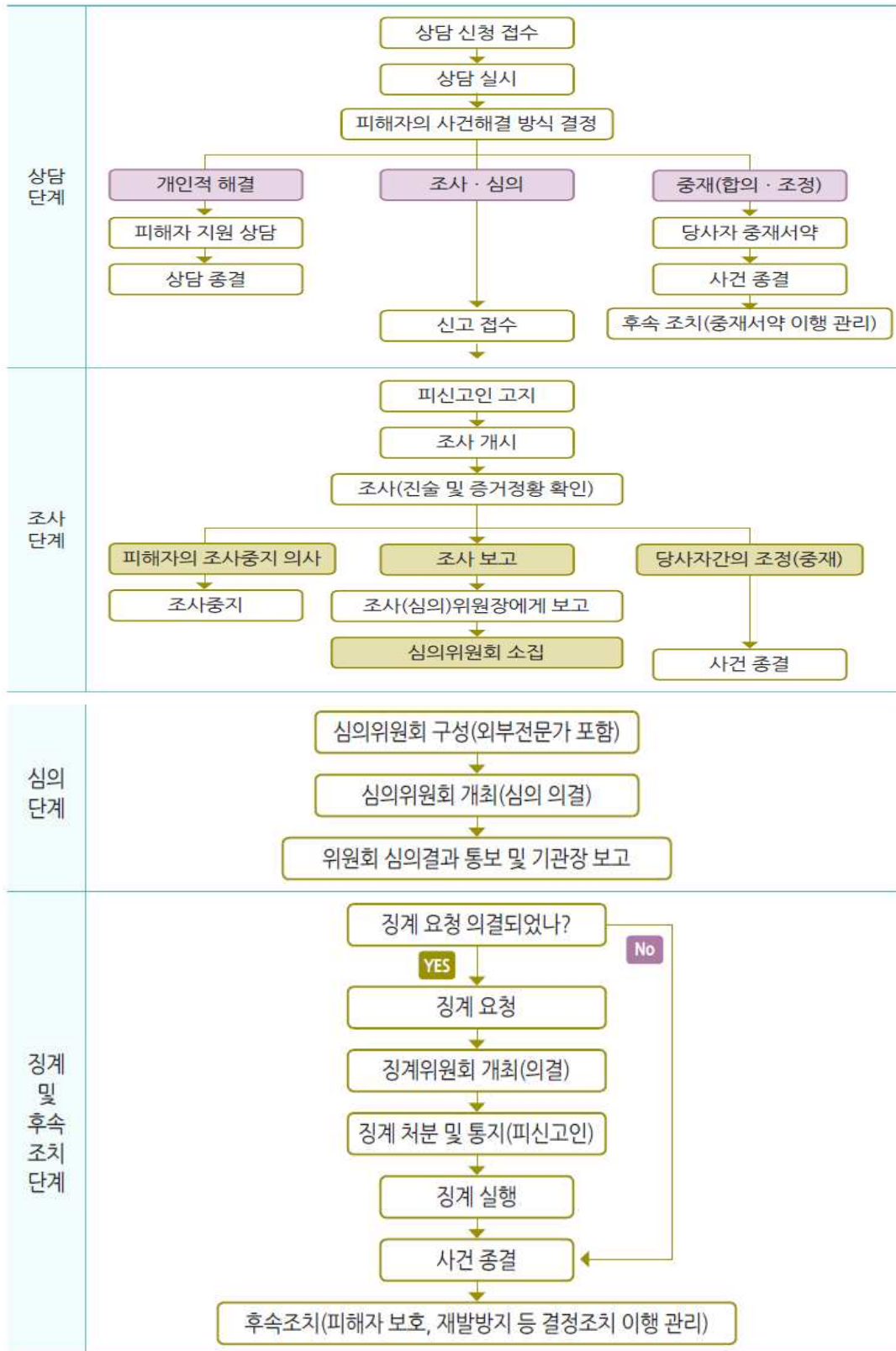
※ 관련 매뉴얼 : 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여성가족부, 2023)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교육부, 2020)

참고 자료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단계 구분

- ❖ (상담) 사건해결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단계로서, 신체·심리·사회적 고충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는 과정이며, 실무역량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단계
- ❖ (조사) 관련근거, 조사개시, 서류제한 기한, 조사대상 및 출석통지, 사건처리절차, 당사자의 권리 등에 대해 담당기구에 사건 신고를 접수·고지 및 조사하는 단계
- ❖ (심의) 사실관계, 행위의 심각성, 피해범위 및 영향 등에 대한 판단 및 의사결정을 위해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 참고인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 (징계·조치)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해당 인원에 대한 징계처분 및 미비사항·개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및 개선추진

상명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1. 성희롱(성폭력) 사건 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서식)

〈○○○○○○(기관명), '21.○.○.(작성일)〉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 사건 개요

발생일	년 월 일	사건접수일 (인지시점)	년 월 일	사건 유형	1:1/多:1/1:多/ 불특정다수
사건 발생기관명	000학교 / 00시 00구청		기관유형	국가기관 / 지자체 / 공직유관단체 / 대학교 / 각급학교	
가해자 - 피해자 관계	상급자-하급자/ 하급자-상급자/동료/사제/ 기타/확인불가 등		가해자 - 피해자 성별	남성 - 남성	
				남성 - 여성	O
				여성 - 남성	
				여성 - 여성	
				확인 불가	
특이사항	국가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에 의한 사건인가				O
	피해자가 다수인가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수사기관 신고 여부(신고시 신고일)				
사건개요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기재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기관 조치사항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기재				

※ 필요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행위자·피해자 신상정보(이름, 나이 등)는 익명 처리 가능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성희롱/성폭력 조사 및 처리 사업	13	9	9.5	31.5	
계	13	9	9.5	31.5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①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3조, 제15조~19조,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54조

※ (관련 기준)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 현업업무 종사자 업무내용 규정
☞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보조,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 관련 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안전관리 총괄	안전보건센터	센터장	구성본	02-2287-7058	주관부서
	기획조정처	처장	권기환	02-2287-5441	협조부서
연구실 안전관리	대학원	원장	오동일	041-550-5323	주관부서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	최연실	02-2287-5041	
	사범대학	학장	장덕호	02-2287-5081	
	융합공과대학	학장	황민철	02-2287-5395	
	문화예술대학	학장	이정아	02-2287-5161	
	산학연구처	처장	유훈	02-2287-5228	
유학생 안전관리	대외협력처	처장	홍영준	02-2287-5036	
재난·시설 안전관리	총무처	처장	구성본	02-2287-5040	
학생활동 안전관리	교무처	처장	양석준	02-2287-5009	
	학생처	처장	전영옥	02-2287-5014	
	입학처	처장	강태구	02-2287-5010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	최연실	02-2287-5041	
	사범대학	학장	장덕호	02-2287-5081	
	경영경제대학	학장	김기태	02-2287-5210	
	융합공과대학	학장	황민철	02-2287-5395	
	문화예술대학	학장	이정아	02-2287-5161	
	계당교양교육원	학장	정수열	02-2287-5109	
	대학원	원장	오동일	041-550-5323	
	학술정보관	관장	김영준	02-2287-5192	
	미래교육원	원장	류현승	02-2287-5367	
	국제언어문화교육원	원장	홍영준	02-2287-5036	
	박물관	관장	이정아	02-2287-5161	
	상명아트센터	센터장	류현승	02-2287-5367	
	상명수련원	원장	김미경	02-2287-5083	
교직원 안전관리	교무처	처장	양석준	02-2287-5009	
	총무처	처장	구성본	02-2287-5040	

□ 위험요인

-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 (주요사유) 안전(예방)대책 미비·부실, 근로자 피로, 작업상 부주의·실수, 숙련 미달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의 위협과 노동생산성 저하 및 효율성 저해

□ 피해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 원인분석

- 산업재해 발생된 사례 없음
- 산업안전·보건 보호대상의 확대 및 업무의 다양화로 산업재해 피해자는 증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보건 조치 체계 마련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안전조치) 위험기계·위험물질 사용 시, 조작·운반 등 위험한 작업 시, 추락·붕괴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조치 이행
- (보건조치) 분진·흙·병원체, 고온·저온·소음과 적정기준 미준수 등에 의한 건강장해발생과 단순 반복작업 등의 인체 부담작업 시 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조치이행
- ※ 관련 매뉴얼 : 산업재해 예방 관련 주요사항 안내(교육부, 2022)

《 산업재해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예시)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21년도 산업재해 통계분석 등을 바탕으로 기관별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을 반영한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추진
 - '22년도에는 구성된 체계에서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안전

보건조치를 포함한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등을 선임하여 안전·보건업무 수행

※ (의무대상)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경비 및 통학보조, 조리시설 등 현업업무 종사자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은 작업으로 인한 유해·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

대상근로자 선정	교육방법 선정	교육 실시	서류보존
• 전직원 • 관리감독자 • 신규 입사자	⇒ • 위탁/집체/현장/인터넷	⇒ • 정기교육 • 채용 시 교육	⇒ • 서류 기록보존 (3년 보존 권장)

○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작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인자(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에 근로자의 노출 수준을 평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
-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직업병 발생 예방

측정대상물질 확인	예비조사	작업환경측정 실시	결과보고
• MSDS 확인 (작업환경측정 의뢰)	⇒ •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예비조사 (작업환경대상 여부확인)	⇒ • 측정방법, 측정시간에 따라 측정실시	⇒ • 서류의 보존기한

○ 근로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수준을 파악,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 적절한 작업배치와 직업성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사후관리
- 집단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이나 건강장해 요인을 가진 근로자의 발견과 적절한 조치

대상근로자 선정	건강진단기관에 진단의뢰	건강진단 실시 및 결과통보
• 전체 근로자 - (사무직) 2년에 1회 - (사무직 외) 1년에 1회	⇒ • 건강진단기관에 의뢰 또는 근로자 개별 희망기관에서 실시	⇒ • 검진 대상자 독려

○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은폐해서는 안 되며, 재해를 통해 향후 동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시행

재해유형 확인 및 보고

- 경미한 사고
- 3일 이상 휴업재해
- 중대재해(즉시 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제출
- 업무상질병일 경우 산재 승인일
기준 1개월 이내



재발방지 계획 수립 및 이행

-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 수시위험성평가
- 수시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 산업재해 통계기록 및 유지·관리

- 산업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국립대학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방향 설정
- 교육부의 산업재해 통계 보고 양식에 따라, 교육기관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매년(연초) 관리

○ 안전시설 및 보호구

- 보호구 착용은 작업환경 또는 작업수행 시 발생하는 유해·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
- 노출된 유해·위험의 종류를 알고 그에 적절한 보호구를 선정하여 지급하고 필요시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

대상작업 파악

- 보호구 지급 대상
유해 위험 작업 파악



보호구 선정 및 구입

- 작업에 따른 적절
보호구 선정 및 구입



보호구 지급

- 보호구 지급 및
올바른 착용 방법 교육



서류보존

- 보호구지급 대장
서류 기록보존(3년)

○ 유해·위험 방지 활동

- 위험성 평가

- 산업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연 1회, 수시평가는 건물, 기계·기구 등의 보수 또는 신규도입 및 재해 발생 시 실시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있는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하기 위한 조사
-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3년마다 1회, 수시평가는 건물, 기계·기구 등의 보수 또는 신규도입 및 재해 발생시 실시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현장 보존

-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현장 관계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 조치
-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한다거나 장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같이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를 제외한 사고현장 보존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안전사고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예시) 참조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 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발생개요·피해상황, 조치·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심각 (빨간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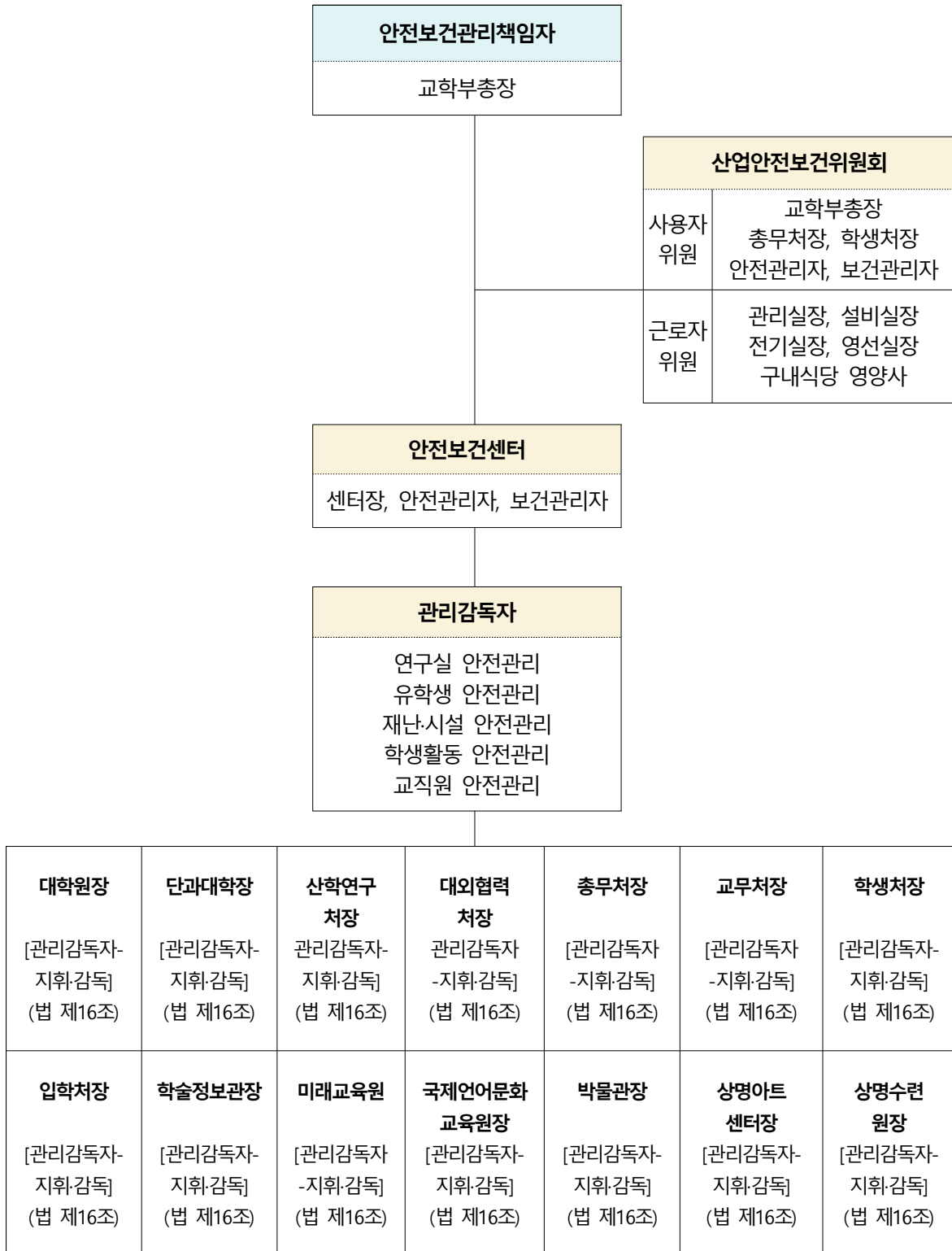
※ 관련 매뉴얼 : 산업재해 예방 관련 주요사항 안내(교육부, 2022)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주체	사업주 : 사업장 단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행위자로 처벌
보호대상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처벌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그외) 안전보건조치 미준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재해정의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발생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
의무 이행사항	1.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기록 및 유지·관리 8. 안전시설 및 보호구 구입에 관한 사항 9.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주체	주요 업무			
사업주 (장관)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총장, 특수학교장, 소속기관장)	<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총괄관리 >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지휘 감독			
	안전 관리자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현업근로자 50~1,000명 : 1명 1,000명 이상 : 2명 이상)	보건 관리자	■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현업근로자 50~5,000명 : 1명 5,000명 이상 : 2명 이상)
관리감독자	<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 ■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등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산업보건의 (현업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 지도 ■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등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현업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 >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중대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상명대학교 안전보건관리체계도

【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



2 중대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2조~제4조, 제6조, 제9조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안전관리 총괄	안전보건센터	센터장	구성본	02-2287-7058	주관부서
	기획조정처	처장	권기환	02-2287-5441	협조부서
연구실 안전관리	대학원	원장	오동일	041-550-5323	주관부서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	최연실	02-2287-5041	
	사범대학	학장	장덕호	02-2287-5081	
	융합공과대학	학장	황민철	02-2287-5395	
	문화예술대학	학장	이정아	02-2287-5161	
	산학연구처	처장	유훈	02-2287-5228	
유학생 안전관리	대외협력처	처장	홍영준	02-2287-5036	
재난·시설 안전관리	총무처	처장	구성본	02-2287-5040	
학생활동 안전관리	교무처	처장	양석준	02-2287-5009	
	학생처	처장	전영옥	02-2287-5014	
	입학처	처장	강태구	02-2287-5010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	최연실	02-2287-5041	
	사범대학	학장	장덕호	02-2287-5081	
	경영경제대학	학장	김기태	02-2287-5210	
	융합공과대학	학장	황민철	02-2287-5395	
	문화예술대학	학장	이정아	02-2287-5161	
	계당교양교육원	학장	정수열	02-2287-5109	
	대학원	원장	오동일	041-550-5323	
	학술정보관	관장	김영준	02-2287-5192	
	미래교육원	원장	류현승	02-2287-5367	
	국제언어문화교육원	원장	홍영준	02-2287-5036	
	박물관	관장	이정아	02-2287-5161	
	상명아트센터	센터장	류현승	02-2287-5367	
	상명수련원	원장	김미경	02-2287-5083	
교직원 안전관리	교무처	처장	양석준	02-2287-5009	주관부서
	총무처	처장	구성본	02-2287-5040	

□ 위험요인

-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를 통칭하나, 공공이용시설(교육기관)은 중대시민재해 범위에서 제외되어 교육기관은 '중대산업재해*'만 해당
 -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중대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노출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위협

□ 피해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 원인분석

- **중대재해 발생된 사례 없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으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통계는 없으나, 최근 산업재해가 증가하는 추세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조치·관리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체계구축)**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으로 학교 중대재해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선제적·자율적으로 유해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안전체계 구축
- **(환경조성)**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재해 없는 근로환경 조성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조치, 재해발생 시 재해재발 방지대책 수립,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교육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

※ 관련 매뉴얼 : 2023년 중대재해 예방 추진 계획(교육부, 2023)

《 중대재해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예시)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시행령 제4조제1호)

- 산업재해가 없는 근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을 위해 핵심적인 목표 및 경영방침 마련

- 안전보건 법규 등 관련 규정 준수, 안전한 근무환경 구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시스템 구축·운영
-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유해·위험요인 적극 발굴·제거 등 재해예방과 개선 활동 지속적 실시
- 모든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안전문화 조성·지원
-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 결정 시 소통을 통한 근로자의 참여 보장 등 투명한 안전보건 경영

○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여부 점검(시행령 제4조제3호)

- 재해예방의 핵심과제로 사업장별(특수학교, 소속기관, 본부 순)·직종별(급식, 청소, 시설 등) 유해성을 평가하고 유해요인 발견 즉시 개선

※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과정

-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장별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여부 점검(분기별 1회)

○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추진(시행령 제4조제4호)

- 위험성 평가, 재해예방 기술지도,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위험요소 개선, 안전보건 교육 등은 필수적으로 예산 확보 및 집행

※ (주요항목)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시행령 제4조제5호)

-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예산에 대한 자율권 확대 추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해당 업무 수행 여부를 평가기준(붙임1)에 따라 상·하반기 각 1회 자체 평가 실시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시행령 제4조제7호)

-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 청취(반기별 1회 이상)
- 게시판 내 안전보건 건의함을 신설,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상시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을 듣고, 재해예방이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

의견수렴	노사 간담회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 협의)	개선조치
- 현장방문 의견 청취 - 의견청취함(WIKI 게시판) - 안전보건교육	⇒ 요청된 의견에 대한 재해예방 반영여부 검토	⇒ 안전조치
쓰레기 분리수거 봉투가 너무 커서(100L) 근골격계에 부담	노사 간담회(또는 안전관련 회의)에서 반영 여부 검토	기관내 분리배출 봉투를 50L로 교체

○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준수(시행령 제4조제8호)

-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매뉴얼*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급박한 위험에 대비

* 청소·환경미화, 시설관리, 경비, 통학보조 등 직종별 산업안전보건 매뉴얼(교육부, '22.)

재해유형 확인 및 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재발방지 계획 수립 및 이행
- 경미한 사고 3일 이상 휴업재해 - 중대재해(즉시 보고)	⇒ -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제출 -업무상질병일 경우 산재 승인일 기준 1개월 이내	⇒ -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 수시위험성평가 - 수시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 도급, 용역, 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조치(시행령 제4조제9호)

-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점검(반기 1회 이상)
- 국가·공공기관은 국가계약법 등 법령상의 계약절차 등을 따르고 있어 기관 임의의 기준·절차 마련에 한계가 있으나, 산재예방 관련 능력을 평가를 고려하여 업체 선정

- **(경쟁입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치 위반으로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의 입찰 제한 등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등에 따라 안전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입찰 추진
-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시에도 업무수행 능력뿐 아니라, 산재예방 조치 능력 고려

○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담당부서 지정(시행령 제4조제2호)

- 업무의 중요도·계속성을 감안, 중대재해 업무담당 전담인력(2인 이상)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조직 설치 추진
- ※ 안전관리자 등 전문가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의무적으로 설치
- 전담조직의 중대재해 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이므로 두 업무는 구분 운영 추진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현장 보존

-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현장 관계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 조치
-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한다거나 장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같이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를 제외한 사고현장 보존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안전사고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예시) 참조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 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발생개요·피해상황, 조치·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심각 (빨간색)

※ 관련 매뉴얼 : 2023년 중대재해 예방 추진 계획(교육부, 2023)

안전·보건 경영방침

상명대학교는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혁신형 인재 양성 대학」의 비전과 창의성, 전문성, 연결성, 지속성의 발전 목표를 위하여 구성원 모두가 안전한 교육·연구·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대학의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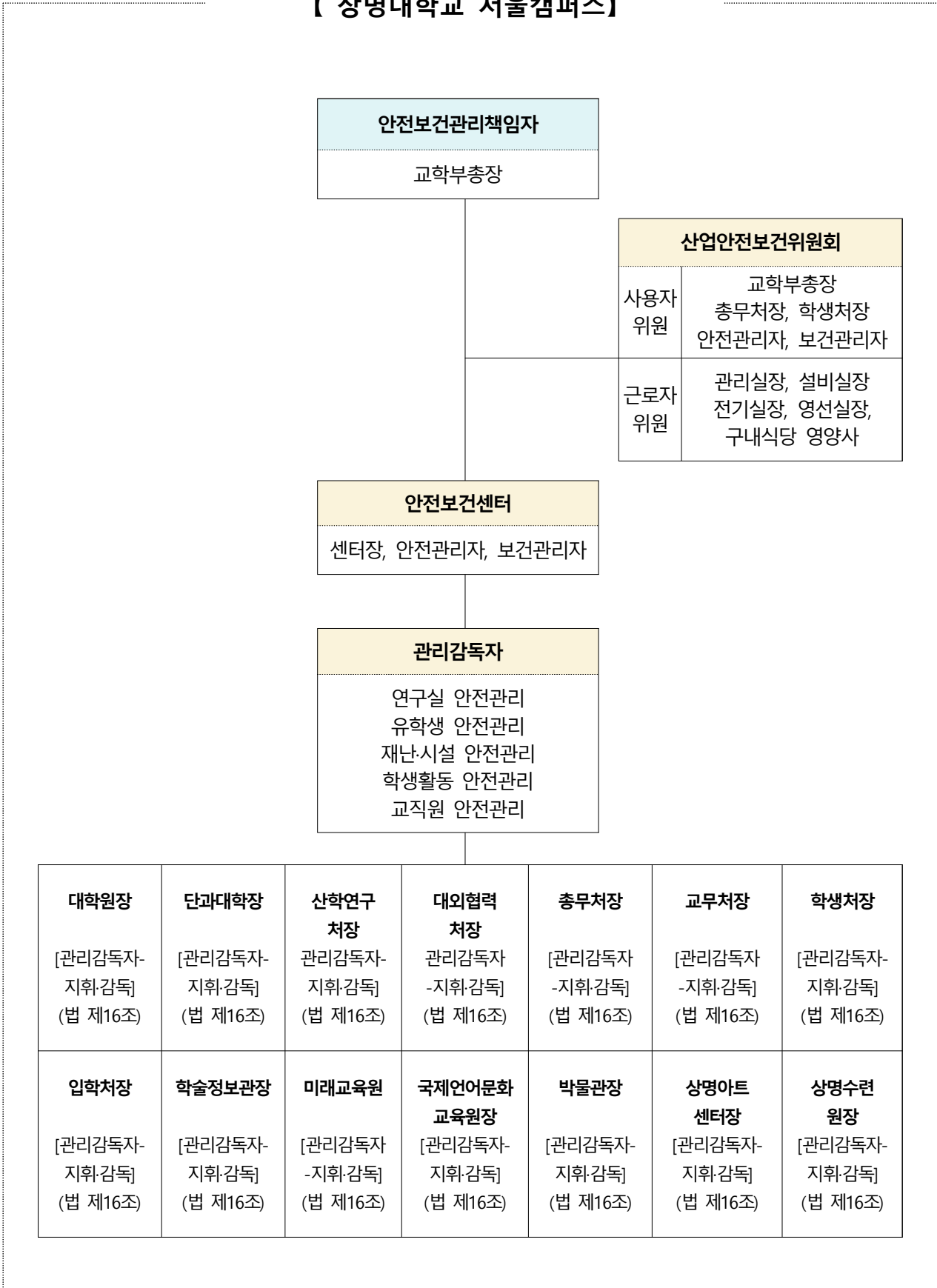
1. 우리대학 구성원 모두가 안전의 기본 원칙을 실천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하고 건강한 캠퍼스를 조성한다.
2. 안전과 조직의 목적, 규모 및 상황에 맞는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준수하며 지속적으로 개선시킨다.
3. 구성원 모두가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훈련을 통하여 **안전·보건관리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4. 캠퍼스의 **유해·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안전보건 사건·사고 예방하고 안전과 건강을 지킨다.
5. 도급·용역·위탁 관계의 **안전·보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환경개선과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6. 안전사고 예방 및 개선대책 마련에 학생과 구성원의 **참여와 협의를 보장**하고, 본 방침을 공개하여 투명한 안전·보건 경영을 실현한다.

2024. 2.

상명대학교 총 장 홍 성 태

□ 상명대학교 중대재해예방 안전관리체계도

【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주체	경영책임자 :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
보호대상	종사자 :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처벌대상	경영책임자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그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재해정의	(중대산업재해) 산안법상 산업재해 중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가 2명 이상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교육기관 제외
의무 이행사항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1.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총괄 관리 전담 조직 설치 ※ 컨트롤타워 역할: 총괄관리의 의미로 안전·보건업무 직접수행의 의미는 아님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조치 4. 인력, 시설, 장비 구비 및 개선 예산편성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6. 전문인력 배치(안전·보건관리자 등) 7.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점검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9. 제3자의 도급, 용역, 위탁의 안전관리를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 <<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 반기 1회 이상 점검, 결과보고 2. 인력, 예산 지원 3.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확인

○ 역할과 책임

구분	주요 역할
경영책임자(장관)	• 사업 대표 및 총괄
안전보건총괄 관리책임관 (교육자치협력안전 국장)	• 경영책임자를 보좌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의 철저 이행, 사전·사후 지원 및 지도 등 관련업무 전반을 총괄·지도 ① 소속기관과 국립특수학교의 안전관리체계 구성 이행 여부 점검 확인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지원 ③ 직종별 사업장별 위해요인 확인 개선 방법 지도 및 지원 ④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추진계획 수립·운영 ⑤ 도급·용역 위탁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등 * 소속기관, 국립특수학교 현장에 재해예방 안착 전까지 안전보건 이행상황 수시 점검(현장방문 및 서면 포함 월 1회 이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학교장, 소속기관장)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추진계획 수립·운영 •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준수

6. 기타

1 비상사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자원관리·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9조2, 제13조의5 등

통합방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적(敵)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7조, 제13조의5 등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2. 7. 5. 시행 예정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예비군대대	대대장	박상규	02-2287-7128	주관부서
팀장	총무인사팀	팀장	안종혁	02-2287-7044	협조부서
팀원	총무인사팀	팀원	정민영	02-2287-6452	

□ 위험요인

- **(비상사태)** 전시·사변(국가적 난리·변고) 및 이에 준하는 사태 등이 발생하여 국가·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국가차원의 긴급 상황
 - 공습·포격, 핵·방사능 피폭, 생물·화학무기 피해 등 적 공격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국가의 주요 시설 파손 및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 피해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 원인분석

- 비상사태 발생된 사례 없음
- 북한군 장사정포, 미사일의 직접적인 공격 대상 가능성은 적으나, 인근에 위치한 청와대, 정부종합청사 등 피격시 오발 또는 파편에 따른 간접 피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 포격 및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피대책 수립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계획수립)** 비상시 행동요령, 비상대비물자 준비·사용요령, 부상자 응급조치, 인명·시설 피해복구 등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한 충무실시계획 등 수립
 - 매년 충무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 승인(11. 15한 제출, 12월 교육부 승인)
 - 민방공 대피계획 수립, 공공용 대피시설 지정(지자체 협조)
 - **(비상조직)** 전시·비상 시 대응을 위해 비상조직체계 구축을 통해 부서·개인별 임무·역할의 명확한 규정·부여 및 신속·정확한 의사결정과 상황통제·관리
 - 합동상황실 구성·준비(비상연락망, 전화·팩스, 비상전력 등 점검)
 - **(교육·훈련)**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필수·핵심요원 등에 대한 주기적인 비상대비 교육과 재난대비훈련·민방위 훈련 등과 연계하여 사태·상황별 정기적인 훈련 실시
- ※ 관련 매뉴얼 : 비상시 국민행동요령(행정안전부)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2	2023	2024	합계	
민방위훈련	93,000	223,000	223,000	539,000	
계	93,000	223,000	223,000	539,000	

1. 대학보험(공제) 가입 총괄현황

구분		대인(학교구성원)	대물(교육시설)
공통	대 학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가입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가입
	교육시설	대학종합보험(공제)	교육시설
	외국인유학생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유학생(상해,질병)
연구실		연구실험 종사자	실험실습실

2. 대학배상책임보험(공제)

민법 & 학교안전법

민 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학교안전법

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①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5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 (관련 규정) 보험업 감독규정

☞ 제1-2조의2(보험계약 및 보험종목의 구분기준) 영 제1조의2제5항에서 "보험계약의 구체적 구분기준" 및 영 제8조제2항에서 "보험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이란 별표1에 따른 구분기준을 말한다.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 준 연 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1인당 보험료 (A)	학생수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인적		물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3	대학종합 보험(공제)	2023-03-31 2024-03-31	2	17,000	37,944	-	-	-	-	수학여행 담보 외국인학생 담보
2024	-	-	-	-	-	-	-	-	-	-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구분	보상한도액(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대인	50,000,000	200,000,000	자기부담금 10만원
	대물	-	10,000,000	자기부담금 10만원
교내·외 (교내·외 치료비 담보 등)	치료비	2,000,000	2,000,000	
	사망,후유장해	-	-	
신입생(OT)등 (신입생 학교행사 중 담보 등)	치료비	3,000,000	3,000,000	
	사망,후유장해	-	100,000,000	

3. 교육시설안전보험(공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관련 기준) 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공제 공제급여 기준

[공제급여 대상] 화재(벼락 포함)·폭발·붕괴·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한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한 공제가입 목적물의 손해 또는 제3자의 법률상 배상책임(대인·대물) 등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 준 연 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건물 보험료 (A)	건물 면적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신체		재물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3	교육연구 시설공제	2023-01-01 2023-12-31	19,570	124,134	19,570					
2023	화재 보험	2023-03.13 2024-03-13	4,247	4,472	4,247					동승동
2023	화재 보험	2023-03.13 2024-03-13	1,213	11,671	1,213					문화예술관
2023	화재 보험	2023-03.13 2024-03-13	770	8개 동 전체	770					학생생활관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한도/자기부담금(억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화재	1.5	10	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	3	10	배상책임

4. 연구실안전보험(공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 준 연 도	보험(공제) 상 품 명	시작일 종료일	1인당 보험료 (A)	학생 수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인적		물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3	연구실 안전공제	2023-03-31 2024-03-30	3.60	2,618	9,454	0	0	0	0	-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한도/자기부담금(백만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유족급여	300	-	
장해급여	300	-	
요양급여	2,000	-	
장의비	10	-	
입원급여	5(만원)	-	

5.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7의2.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

□ 조직 현황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 장	학생상담센터	팀 장	홍영숙	02-2287-7025	주 관부서
팀 원	학생상담센터	팀 원	송소원	02-2287-5333	
팀 원	학생상담센터	팀 원	김수호	02-2287-7194	
팀 원	학생상담센터	팀 원	이수현	02-2287-6438	

□ 지원 내용

구분	추진 내용
개인상담	▪ 학생들의 개인적인 문제해결을 돕기 위한 개인상담
집단상담	▪ 학생들의 자아성장 및 효율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집단상담
심리검사	▪ 각종 심리검사의 실시 및 해석상담
교육	▪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지원하는 각종 교육

IV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1. 재난안전훈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4(재난대비훈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이하 "훈련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총무인사팀	팀장	안종혁	02-2287-7044	주관부서
팀원		담당	정민영	02-2287-6452	
팀장	학생복지팀	팀장	홍영숙	02-2287-7025	협조부서
팀원		담당	서승연	02-2287-6454	
팀장	대학원교학팀	팀장	권용화	02-2287-7056	
팀원		과장	김용균	02-2287-7089	
팀장	교원인사팀	팀장	박성진	041-550-5100	
팀원		과장	변진국	02-2287-7090	
팀원	국제학생지원팀	팀장	유창섭	02-2287-7059	
팀원	국제언어문화교육원	팀장	유창섭	02-2287-7059	
팀장	미래교육원	원장	류현승	02-2287-5367	
팀원		주임	황원태	02-2287-7119	

□ 2023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부생(신입생)	2023년 2월	1	-	
대학원생(신입생)	2023년 2,8월	1	-	
평생교육원	2023년 2월	1	-	
국제언어문화교육원	2023년 2월	1	-	
교직원	2023년 8월	8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대학 재난안전훈련	- 단계별(대비) 재난 대응 훈련 수행 - 대학 캠퍼스 내외 재난·사고 유형별 훈련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재난대응훈련 - 대학 캠퍼스 구성원 대상 매년 정기적인 대피훈련 실시

□ 2024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부생(신입생)	2024년 2월중	1	-	
대학원생(신입생)	2024년 2,8월중	1	-	
평생교육원	2024년 2월중	1	-	
국제언어문화교육원	2024년 2월중	1	-	
교직원	2024년 8월중	1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대학 재난안전훈련	■ 단계별(대비) 재난 대응 훈련 수행 ■ 대학 캠퍼스 내외 재난·사고 유형별 훈련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재난대응훈련 ■ 대학 캠퍼스 구성원 대상 매년 정기적인 대피훈련 실시

2. 대학 안전사고 예방 교육

■ ■ ■ ■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0조(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학생복지팀	팀장	홍영숙	02-2287-7025	주관부서
팀장	학사운영팀	팀장	이호선	02-2287-7054	
팀장	관리팀	팀장	구성본	02-2287-7058	협조부서
팀장	총무인사팀	팀장	안종혁	02-2287-7044	

☐ 2023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매학기	2시간	100	
	매년 2월~3월	1시간	1,400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대학 캠퍼스 안전 체험 교육	대학 캠퍼스 내 구성원들의 안전 체험 교육 (화재대피훈련 등 재난 발생시 상황 및 대피 체험 교육)
행사 시설 이용 시 안전성 확보(대피로 확보 등) 교육	대학 내 공연 행사 시설 이용시 대피로 교육

☐ 2024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매학기	2시간	100	
	매년 2월~3월	1시간	1,400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대학 캠퍼스 안전 체험 교육	대학 캠퍼스 내 구성원들의 안전 체험 교육 (화재대피훈련 등 재난 발생시 상황 및 대피 체험 교육)
행사 시설 이용 시 안전성 확보(대피로 확보 등) 교육	대학 내 공연 행사 시설 이용시 대피로 교육

3. 대학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안전보건센터	센터장	구성본	02-2287-7058	주관부서
팀원	안전보건센터	팀원	권우창	02-2287-7020	
팀원	관리팀	주임	함준수	02-2287-7173	협조부서
팀원	총무인사팀	팀원	정민영	02-2287-6452	
팀원	보건건강관리센터	팀원	서지예	02-2287-5200	

□ 2023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3년 10월	신규 6시간 보수 6시간	1명	
관리감독자	'23년 11월	연간 16시간	3명	
안전관리자	'23년 11월	신규 34시간 보수 24시간	1명	
보건관리자	-	신규 34시간 보수 24시간	1명	
현업업무종사자	매달 2시간	매달 2시간	약 45명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관리감독자	■ 현업업무종사자 관리 및 비상연락망 유지 ■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 안전조치 및 보고체계에 따른 보고 등

구분	추진내용
안전관리자	▪ 분야별 해당 작업장에 대한 위험성 대비 등 ▪ 안전장비, 보호구, 위해방지 시설 등에 대한 정기 점검 및 정비 ▪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훈련 ▪ 재해 발생 시 원인조사 및 대처방안 수립 ▪ 안전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비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에 관한 업무수행 ▪ 관련 기관과의 연락 및 협조 ▪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에 의한 보고 등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에 관한 업무수행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법률이나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 보좌 및 지도·조언 ▪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현업업무종사자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어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2024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신규 6시간 보수 6시간	1명	
관리감독자	'24년 11월 예정	연간 16시간	3명	
안전관리자	-	신규 34시간 보수 24시간	1명	
보건관리자	'24년 11월 예정	신규 34시간 보수 24시간	1명	
현업업무종사자	매달 2시간	매달 2시간	약 45명	

구분	추진내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관리감독자	▪ 현업업무종사자 관리 및 비상연락망 유지 ▪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 안전조치 및 보고체계에 따른 보고 등
안전관리자	▪ 분야별 해당 작업장에 대한 위험성 대비 등 ▪ 안전장비, 보호구, 위해방지 시설 등에 대한 정기 점검 및 정비 ▪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훈련 ▪ 재해 발생 시 원인조사 및 대처방안 수립 ▪ 안전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비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에 관한 업무수행 ▪ 관련 기관과의 연락 및 협조 ▪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에 의한 보고 등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에 관한 업무수행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법률이나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 보좌 및 지도·조언 ▪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현업업무종사자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어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안전교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제20조(교육·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과 방법, 교육·훈련 담당자의 요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센터장	안전보건 센터	센터장	구성본	02-2287-7058	주관부서
팀원		담당	권우창	02-2287-7020	
팀원		담당	장재우	02-2287-6422	

☐ 2023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신규교육훈련	온라인교육과정	1	진행중	
정기교육훈련	온라인교육과정	3	진행중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신규교육훈련	연구실 사고사례 및 안전한 연구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정기교육훈련	안전관리실무, 연구실사고, 실험전·후안전, 안전의식, 안전관리기본

☐ 2024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신규교육훈련	집체교육	1	약 650명	100만원
정기교육훈련	온라인교육과정	3	약 2,500명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신규교육훈련	연구실 사고사례 및 안전한 연구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정기교육훈련	안전관리실무, 연구실사고, 실험전·후안전, 안전의식, 안전관리기본

□ 2024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	각종 게시물	상시	5,000명	-
감염병 진료 및 보호				
감염병 예방 수칙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감염병 예방교육	■ 감염병 예방 및 조치사항 매뉴얼 제작 배포 ■ 각종 게시물 부착

5. 성범죄 예방교육

성폭력방지법 등

성폭력방지법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센터장	인권센터	센터장	김동민	02-2287-7013	주관부서
팀장	인권센터	팀장	홍영숙	02-2287-7025	
팀원	인권센터	담당	김도훈	02-2287-7027	
소장	인권상담소	소장	김평강	02-2287-5140	
팀원	인권상담소	담당	한지수	02-2287-5369	
팀장	학생복지팀	팀장	홍영숙	02-2287-7025	협조부서
팀장	총무인사팀	팀장	안종혁	02-2287-7044	
팀장	교원인사팀	팀장	박성진	02-2287-7070	
팀장	대학원교학팀	팀장	권용화	02-2287-7056	

□ 2023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2023.5.1.~12.31	110분	2,294명	학생·교직원 330만원
전체 교직원	2023.5.1.~12.31	136분	687명	
고위직 교직원	2023.8.28.~12.31	165분	233명	고위직 40만원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폭력예방통합교육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법정의무교육) ■ 교육방법으로서 학생·교직원은 사이버 교육, 고위직 교직원은 대면교육 및 사이버교육 실시

□ 2024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학생	사이버 교육	1회	7,500명	학생·교직원 330만원
전체 교직원	사이버 교육	1회	700명	
고위직 교직원	대면·사이버 교육	각 1회	260명	고위직 40만원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폭력예방통합교육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법정의무교육) ■ 교육방법으로서 학생·교직원은 사이버 교육, 고위직 교직원은 대면교육 및 사이버교육 실시

6. 비상대비 교육·훈련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 제20조의4(비상대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의5에 따라 매년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교육 계획에 따라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예비군대대	대대장	박상규	02-2287-7128	주관부서
팀장	학생복지팀	팀장	홍영숙	02-2287-6454	협조부서

☐ 2023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교직원	10.26	3시간	1명	50,000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총무실시계획수립	- 총무실시계획 작성 및 구체화 교육 - 보안교육

☐ 2024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교직원	총무실시계획수립	1회	1명	50,000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총무실시계획수립	- 총무실시계획 작성 및 구체화 교육 - 보안교육

1.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대학교 캠퍼스 내외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을 위해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 유관기관과 재난전문가(교수, 박사 등),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캠퍼스 내외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계획, 대학 학교안전 관련 주요정책, 유관기관 협업과제 발굴 등 안전 및 보건의 확보 및 개선에 관한 의견 청취(년 2회 이상)

2. 사고 유형별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법

□ 재난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종로소방서	02-730-0119		
신영119 안전센터	02-391-0119		
한국전기안전공사	02-6488-6200		서울지역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02-393-0795		서울서부지사
종로구 보건소	02-2148-3520		
강북삼성병원	080-899-7575		
세감정 파출소	02-3701-4507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총무인사팀	02-2287-5020		총무인사팀
	02-2287-5200		보건건강관리센터

□ 안전사고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종로소방서	02-730-0119		
신영119 안전센터	02-391-0119		
한국전기안전공사	02-6488-6200		서울지역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02-393-0795		서울서부지사
종로구 보건소	02-2148-3520		
강북삼성병원	080-899-7575		
세감정 파출소	02-3701-4507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총무인사팀	02-2287-5020		총무인사팀
	02-2287-5200		보건건강관리센터

□ 감염병 확산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종로보건소	02-2148-3520		
강북삼성병원	080-899-7575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총무인사팀	02-2287-5020		총무인사팀
	02-2287-5200		보건건강관리센터

□ 범죄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법무부 스마일센터	02-333-1295	generalsupport@naver.com	
서울종로경찰청	02-3701-4329		
한국범죄자지원중앙센터	02-537-1295		
세검정 파출소	02-3701-4507		
경찰청	112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총무인사팀	02-2287-7044	chahn@smu.ac.kr	총무인사팀
	02-2287-7081	jmcho@smu.ac.kr	총무인사팀

□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종로소방서	02-730-0119		
신영119 안전센터	02-391-0119		
한국전기안전공사	02-6488-6200		서울지역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02-393-0795		서울서부지사
세검정 파출소	02-3701-4507		
강북삼성병원	080-899-7575		
종로보건소	02-2148-3520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총무인사팀	02-2287-7044	chahn@smu.ac.kr	총무인사팀
	02-2287-7081	jmcho@smu.ac.kr	총무인사팀

□ 비상사태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교육부비상담당관실	041-203-6191	비상대비 업무협조
종로구청 민방위팀	02-2148-1471	민방위운영 협조
육군56사단 219여단	02-354-1113	직장방호 협조
평창·부암동대	02-379-6113	직장방호 협조
세검정파출소	02-3769-3047	직장방호 협조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교육부 종합상황실	041-203-6191	비상대비 업무협조
종로구청 상황실	02-2148-4001	민방위운영 협조
육군56사단 상황실	02-354-1113	직장방호 협조
평창·부암동대	02-379-6113	직장방호 협조
세검정파출소	02-3769-3047	직장방호 협조
상명대 종합상황실	02-2287-5193/5195	비상대비 업무
상명대 예비군상황실	02-2287-7128/5117	민방위운영, 직장방호

3) 상명대학교 종합상황실 : 주관 총무인사팀 / 장소 대학본부 소회의실

4) 상명대학교 예비군상황실 : 주관 예비군대대 / 장소 학생회관 예비군대대

1. 역할과 임무

-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 부서에서는 계획의 수립·시행, 이행점검, 대책수립 수행
- 위험별 상황관리전담 부서에서는 지휘부(총괄 담당, 상황 총괄), 실무반(상황 대응, 사고 수습, 당직), 협조부서(언론 대응, 예산 협력, 유관기관 협력) 등으로 구분하여 위험상황 대응 및 관리 수행

2. 관계 법령 등 연계

- 관련 법령, 재난안전관리 규정, 및 위기대응 표준·실무·행동매뉴얼 등을 기반으로 대학안전관리계획 수립 필요
 - 관계 법령·규정·매뉴얼 개정 시 대학안전관리계획 보완 필요
- 시·도 및 시·군·구 등 유관기관 안전관리계획과 연계·협조하여 대학안전관리 집행계획 및 세부집행계획 수립 필요

3. 대학 업무연속성계획(BCP : Business Continuity Plan) 수립·시행

-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비상조직체계를 구성하고, 팀·개인별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한 후 개인별 임무 숙지를 위한 교육·안내 실시
- 각 대학은 중대본 발표, 학내 확진자 발생률에 따라 시행할 비상대응계획인 기능연속성 계획 사전수립 및 학내 공유
 - 비상상황에도 유지해야할 필수·핵심기능을 사전에 설정하고, 유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치

4. 대학별 안전관리 규정 마련·운영

- 대학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대학별 자체 ‘안전관리 규정’ 마련·운영
 - 대학안전관리의 구체적 적용 대상 및 범위 설정
 - 안전교육 실시, 안전대책의 점검·확인 등 학교장의 책무 규정
 - 대학안전관리 위험성평가 대상 및 방법·절차 규정
 - 대학안전사고 예방·조사 위원회 구성·운영관리
 - 대학안전관리 조직 구성·운영관리
 -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운영관리 등

붙임1
위험요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총괄)
<서울캠퍼스 담당부서 및 담당자>

위험유형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1. 재난	① 자연재난	팀장	관리팀	팀장	구성본	02-2287-7058	주관부서
		팀원	관리팀	주임	함준수	02-2287-7173	
		팀원	관리팀	담당	강홍식	02-2287-7101	
		팀장	총무인사팀	팀장	안종혁	02-2287-7044	협조부서
		팀장	학생복지팀	팀장	홍영숙	02-2287-7025	
		팀장	학사운영팀	팀장	이호선	02-2287-7054	
	② 사회재난	팀장	관리팀	팀장	구성본	02-2287-7058	주관부서
		팀원	관리팀	주임	서건	02-2287-7044	
		팀원	관리팀	담당	강홍식	02-2287-7101	
		팀장	총무인사팀	팀장	안종혁	02-2287-7044	협조부서
		팀장	학생복지팀	팀장	홍영숙	02-2287-7025	
		팀장	학사운영팀	팀장	이호선	02-2287-7054	
2. 안전사고	① 대학안전사고	처장	학생처	처장	전영옥	02-2287-5014	주관부서
		처장	교무처	처장	양석준	02-2287-5009	
		처장	입학처	처장	강태구	02-2287-5010	
		학장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	최연실	02-2287-5041	
		학장	사범대학	학장	장덕호	02-2287-5081	
		학장	경영경제대학	학장	김기태	02-2287-5210	
		학장	융합공과대학	학장	황민철	02-2287-5395	
		학장	문화예술대학	학장	이정아	02-2287-5161	
		학장	계당교양교육원	학장	정수열	02-2287-5109	
		원장	대학원	원장	오동일	041-550-5323	
		관장	학술정보관	관장	김영준	02-2287-5192	
		원장	미래교육원	원장	류현승	02-2287-5367	
		원장	국제언어문화교육원	원장	홍영준	02-2287-5036	
		관장	박물관	관장	이정아	02-2287-5161	
		센터장	상명아트센터	센터장	류현승	02-2287-5367	
		원장	상명수련원	원장	김미경	02-2287-5083	
	② 교육시설안전사고	팀장	관리팀	팀장	구성본	02-2287-7058	주관부서
		팀원	관리팀	주임	함준수	02-2287-7173	
		팀장	총무인사팀	팀장	안종혁	02-2287-7044	협조부서
		팀장	학생복지팀	팀장	홍영숙	02-2287-7025	
	③ 연구실사고	팀장	안전보건센터	센터장	구성본	02-2287-7058	주관부서
		팀원	안전보건센터	담당	권우창	02-2287-7020	
		팀원	안전보건센터	담당	장재우	02-2287-6422	
		원장	대학원	원장	이성호	02-2287-5029	협조부서
		학장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	최연실	02-2287-5041	
		학장	사범대학	학장	장덕호	02-2287-5081	
		학장	융합공과대학	학장	황민철	02-2287-5395	
		학장	문화예술대학	학장	이정아	02-2287-5161	
		처장	산학연구처	처장	유훈	02-2287-5228	

위험유형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3. 감염병 확산	① 코로나-19 및 기타	팀장	총무인사팀	팀장	안종혁	02-2287-7044	주관부서
		담당	총무인사팀	담당	정민영	02-2287-6452	
		팀장	기획예산팀	팀장	김수영	02-2287-7049	협조부서
		팀장	교원인사팀	팀장	박성진	02-2287-7070	
		팀장	학사운영팀	팀장	이호선	02-2287-7054	
		팀장	학생복지팀	팀장	홍영숙	02-2287-7025	
		팀장	대학원교학팀	팀장	권용화	02-2287-7056	
		원장	미래교육원	원장	류현승	02-2287-5367	
		차장	학술정보지원팀	차장	임재선	02-2287-7026	
		팀장	국제학생지원팀	팀장	유창섭	02-2287-7059	
4. 범죄	① 일반범죄	팀장	총무인사팀	팀장	안종혁	02-2287-7044	주관부서
		팀원	총무인사팀	담당	정민영	02-2287-6452	
		팀장	교원인사팀	팀장	박성진	02-2287-7070	협조부서
		팀원	교원인사팀	담당	김지수	02-2287-6458	
		팀장	학생복지팀	팀장	홍영숙	02-2287-7025	
		팀원	학생복지팀	담당	서승연	02-2287-6454	
	② 성범죄	센터장	인권센터	센터장	김동민	02-2287-7013	주관부서
		팀장	인권센터	팀장	홍영숙	02-2287-7025	
		팀원	인권센터	담당	김도훈	02-2287-7027	
		소장	인권상담소	소장	김평강	02-2287-5140	
		팀원	인권상담소	담당	한지수	02-2287-5369	협조부서
		팀장	학생복지팀	팀장	홍영숙	02-2287-7025	
		팀장	총무인사팀	팀장	안종혁	02-2287-7044	
		팀장	교원인사팀	팀장	박성진	02-2287-7070	
		팀장	대학원교학팀	팀장	권용화	02-2287-7056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① 산업재해 및 ② 중대재해	안전관리 총괄	안전보건센터	센터장	구성본	02-2287-7058	주관부서
			기획조정처	처장	권기환	02-2287-5441	협조부서
		연구실 안전관리	대학원	원장	오동일	041-550-5323	주관부서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	최연실	02-2287-5041	
			사범대학	학장	장덕호	02-2287-5081	
			융합공과대학	학장	황민철	02-2287-5395	
			문화예술대학	학장	이정아	02-2287-5161	
			산학연구처	처장	유훈	02-2287-5228	
		유학생 안전관리	대외협력처	처장	홍영준	02-2287-5036	
		재난·시설 안전관리	총무처	처장	구성본	02-2287-5040	
			교무처	처장	양석준	02-2287-5009	
		학생활동 안전관리	학생처	처장	전영옥	02-2287-5014	
			입학처	처장	강태구	02-2287-5010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	최연실	02-2287-5041	
			사범대학	학장	장덕호	02-2287-5081	
			경영경제대학	학장	김기태	02-2287-5210	
			융합공과대학	학장	황민철	02-2287-5395	
			문화예술대학	학장	이정아	02-2287-5161	
			계당교양교육원	학장	정수열	02-2287-5109	
			대학원	원장	오동일	041-550-5323	

위험유형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5. 산업 재해 및 중대 재해	① 산업 재해 및 ② 중대 재해	학생활동 안전관리	학술정보관	관장	김영준	02-2287-5192	주관부서
			미래교육원	원장	류현승	02-2287-5367	
			국제언어문화 교육원	원장	홍영준	02-2287-5036	
			박물관	관장	이정아	02-2287-5161	
			상명아트센터	센터장	류현승	02-2287-5367	
		교직원 안전관리	상명수련원	원장	김미경	02-2287-5083	
			교무처	처장	양석준	02-2287-5009	
			총무처	처장	구성본	02-2287-5040	
6. 기타	① 비상 사태	팀장	예비군대대	대대장	박상규	02-2287-7128	주관부서
		팀장	총무인사팀	팀장	안종혁	02-2287-7044	협조부서
		팀원	총무인사팀	팀원	정민영	02-2287-6452	

붙임2

위험요인별 피해 현황(총괄)

위험유형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1. 재난	① 자연재난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 피해	사망(실종)	-	-	-	-	-
			부상	-	-	-	-	-
			계	-	-	-	-	-
	② 사회재난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 피해	사망(실종)	-	-	-	-	-
			부상	-	-	-	-	-
			계	-	-	-	-	-
2. 안전사고	① 대학안전 사고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 피해	사망(실종)	-	-	-	-	-
			부상	-	-	-	-	-
			계	-	-	-	-	-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 피해	사망(실종)	-	-	-	-	-
			부상	-	-	-	-	-
			계	-	-	-	-	-
	③ 연구실 사고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 피해	사망(실종)	-	-	-	-	-
			부상	-	-	-	-	-
			계	-	-	-	-	-
3. 감염병확산	① 코로나-19	감염자 수	-	4	65	827	29	185
		인명 피해(사망)	-	-	-	-	-	-
4. 범죄	① 일반범죄	발생건 수	-	-	-	-	-	-
		피해자 수	-	-	-	-	-	-
	② 성범죄	발생건 수	-	-	-	-	-	-
		피해자 수	-	-	-	-	-	-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① 산업재해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 피해	사망(실종)	-	-	-	-	-
			부상	-	-	-	-	-
			계	-	-	-	-	-
	② 중대재해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 피해	사망(실종)	-	-	-	-	-
			부상	-	-	-	-	-
			계	-	-	-	-	-
6. 기타	① 비상사태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 피해	사망(실종)	-	-	-	-	-
			부상	-	-	-	-	-
			계	-	-	-	-	-